

삼성 KPMG

# Samjong INSIGHT

Vol. 68 · 2020  
삼성KPMG 경제연구원

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 :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Thought Leadership I  
마이데이터와  
국내외 정책 동향

Thought Leadership II  
선도적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심층 분석



## 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 :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 Executive Summary

### Thought Leadership I

#### 마이데이터와 국내외 정책 동향

마이데이터의 개념 및 도입 배경 .....	2
해외 마이데이터 정책 및 금융분야 추진 동향 .....	7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 및 금융분야 추진 동향 .....	15
정책적 시사점 .....	24

### Thought Leadership II

#### 선도적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심층 분석

마이데이터를 이끄는 기업들 .....	26
편의성이 최적화된 재무관리서비스 .....	28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화된 금융서비스 .....	31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즈니스에 구현한 개인데이터 저장소 .....	36
산업적 시사점 .....	42

### Contact us

곽호경 책임연구원	hokyungkwak@kr.kpmg.com	02-2112-7962
조민주 선임연구원	minjoocho@kr.kpmg.com	02-2112-7589
최연경 선임연구원	yeonkyungchoi@kr.kpmg.com	02-2112-7769
김규림 이사	gyulimkim@kr.kpmg.com	02-2112-4089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주요국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활용하는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 산업 내 소비자의 금융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API 방식으로 다양한 금융정보를 개방·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중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도입 동향을 다각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는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심도있게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02



### Thought Leadership I

## 마이데이터와 국내외 정책 동향

- 마이데이터란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에 따라 본인 데이터를 개방·활용하는 것을 의미
- EU, 영국, 호주 등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내 개인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임
-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 및 금융 산업의 경쟁 촉진,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 강화를 골자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융권 내 경쟁 심화와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혁신의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26



### Thought Leadership II

## 선도적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심층 분석

-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는 분산되어 있는 개인금융정보의 통합조회·관리, 맞춤형 데이터 분석과 이에 근거한 금융상품 자문·추천서비스, 데이터 분석 및 제3자 제공 업무 등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선도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개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미국의 민트는 소비자 친화적 금융 서비스로 기존 플레이어를 넘어서며 시장 주도권 확보
- 중국의 핑안보험그룹은 핵심사업이 보험업이나 그룹이 보유한 여러 금융·비금융 플랫폼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데이터 분석 기반 상품 추천·판매에 탁월한 역량 보유
- 영국 디지미는 금융·비금융데이터를 망라한 개인데이터 저장소 비즈니스 모델로 데이터 수집부터 보관, 공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며 플랫폼 사업 영위



# Thought Leadership I

## 마이데이터와 국내외 정책 동향



### 마이데이터의 개념 및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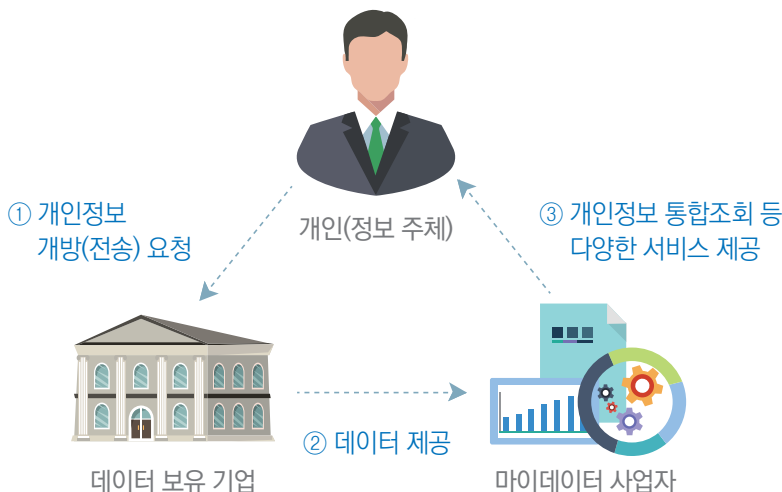
“ 데이터 경제시대,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과 정보 보호가 중요 문제로 부각 ”

### 디지털 혁신으로 촉발된 데이터에 대한 개인 통제권 강화

오늘날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전자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클라우드(Cloud)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이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폭하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생성되고 축적되는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내’가 생성하는 ‘나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마이데이터(MyData)다.

### » 마이데이터 개요



1. 개인정보 정보 이동권 행사
  - 개인이 기업(기관)에게 정보 제공 요구
2. 개인의 요청에 따라 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 개방
  - 오픈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방식
3. 개인정보 확인 및 활용
  -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Source : 금융위원회(2018.0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 동의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 ”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에 근거하여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및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주체자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개방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는 금융, 의료, 통신, 유통 등과 같이 데이터가 여러 기업·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정보 주체의 권리에 근거하여 해당 데이터가 개방할 경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 산업의 경우, 은행, 보험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개인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금융회사 내 축적된 데이터를 개인이 생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개인데이터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폐쇄적으로 운영·관리되어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6년 제정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확대·강화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특히 GDPR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체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분야에서는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다양한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의 데이터를 한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재무서비스나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개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보 주체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활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 중심의 현 데이터 관리 체계가 개인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

- 

**1 금융정보 통합조회** : 분산되어 있는 개인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제공  
→ 개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
- 

**2 재무현황 분석** :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개인 재무현황 분석  
→ 고객의 금융·거래데이터를 집계하여 고객의 소비패턴, 재무상태 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고객에게 제공
- 

**3 신용관리·정보관리 지원** : 개인 재무현황을 기초로 신용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본인정보 관리 업무  
→ 개인신용평가 기초자료 등을 분석하여 신용평점 개선·관리를 위한 정보를 신용평가 기관에 대리 제출 또는 잘못 등록된 개인정보 삭제 등을 권고
- 

**4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 : 개인 재무현황을 기초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금융상품 추천  
→ 개인의 현 재무현황 및 신용상태에 따라 상품별 가격과 혜택을 비교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

“  
데이터 제공의 기술적  
도구로 호환성 · 안정성을  
가진 API 방식 등 필요  
”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데이터 제공에 대한 기업 의무화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정보 주체의 정보 이동권(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근거하여 본인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개방성을 높임으로써 개인데이터의 유용성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의 작동원리는 1) 개인의 요청이 발생하면 2)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요청자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이 보유한 본인 데이터에 대해 제3자로 전송(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의 요청에 따른 기업의 데이터 개방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데이터가 원활히 그리고 안전하게 전송되어야 한다. 데이터 제공의 기술적 방식이 상호운용성이 높은 경우, 데이터의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방된 데이터는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기계가 안전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Machine Readable Format)로 온라인(Online)상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데이터의 제공 및 공유를 위한 기술적인 방식은 크게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 방식과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이 있다. 스크린 스크래핑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개인의 인증 정보를 받아 대리 접속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스크린에 보여지는 개인정보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표준 API 방식을 채택하면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API 내 포함된 데이터만 전송 받을 수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개인데이터 수집 및 보안 이슈로부터 자유롭다. 무엇보다 데이터 전송에 대한 표준화는 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을 용이하게 만들어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많은 나라들이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된 채널로서 API를 개방하는 방식(오픈 API)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 » 주요 행위자별 마이데이터 기대효과

개인	기업		정부
	데이터 보유 기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정보 접근권 및 안전한 활용 방법 획득</li> <li>· 새롭고 편의성이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li> <li>· 본인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li> <li>· 투명한 고객데이터 운용으로 사용자들의 신뢰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관련, 기존 사업자들과 동등한 환경 내에서 공정한 경쟁 가능</li> <li>·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li> <li>· 고객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신규 시장 창출</li> <li>·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 등에게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기회 제공</li> <li>· 기업 및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li> </ul>

Source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1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참고] 스크린 스크래핑 및 표준 API 방식 비교

	스크린 스크래핑	표준 API	표준 API 장점
고객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인증정보를 핀테크 기업 서비스에 제공함</li> <li>· 핀테크 기업은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를 저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에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함</li> <li>· 사용자가 핀테크 기업에게 필요한 접근 권한을 부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주체가 핀테크 기업에서 정보 주체인 사용자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자가 정보접근에 대한 주도권 확보</li> </ul>
정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화면에 보여지는 데이터 중 필요 데이터 추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테크 기업 서비스는 API를 이용하여 접근이 허용된 필요정보만 수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 수집 차단</li> <li>·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용이 및 보안대책 추가 강화 가능</li> </ul>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시스템이 연동되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며 표준화가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I 및 데이터 형식(Format)에 대한 표준화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된 API를 통해 기업 간 데이터 수집 · 활용에 대한 동등한 조건이 조성되어 건전한 경쟁 촉진</li> <li>· 스크래핑 프로그램 및 웹사이트 구성 환경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li> </ul>
정보보호 ·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테크 기업이 중요정보 (ID/PW) 직접 저장관리</li> <li>· 해킹 시 중요정보(인증정보 등) 유출 가능성 존재</li> <li>· 핀테크 기업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접근 가능</li> <li>· 사용자 중요정보 남용 또는 악의적인 활용 가능성</li> <li>· 사용자가 서비스 탈퇴 시, 입력한 인증정보 변경 또는 재발급 필요(변경하지 않을 경우 핀테크 기업이 인증정보 지속 보유)</li> <li>·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이나 보안 기술 적용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테크 기업은 중요정보 대신 토큰(허용권한증표) 관리</li> <li>· 해킹 시 토큰 폐기 처리 및 사용에 대한 접근통제 등 보안대책 수립 가능</li> <li>· 사용자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정보 접근 통제 용이</li> <li>· 서비스 탈퇴 시 토큰을 무효화 처리 또는 토큰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인증불가 처리 가능</li> <li>·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 및 보안기술 적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의 중요정보를 서버 또는 모바일앱 내 저장하지 않아 안전성 확보</li> <li>·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한 API를 통해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험 감소</li> </ul> 



## 마이데이터 선결요소,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개인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데이터 제공자)은 데이터가 적절한 수신자(데이터 활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요청하는 개인(요청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인증해야 한다.

“  
마이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 선결 되어야 ...  
”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요청자를 인증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대조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에게 요구하거나, 신용평가 기관·IT보안기업이 제공하는 상용 인증 솔루션을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민감한 개인데이터를 포함하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의 보편화는 개인과 관련된 인증 관련 기술 솔루션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환경은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영국의 금융데이터 개방 정책인 오픈뱅킹에 대해 2018년 9월 영국인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Unlimited Group Omnibus Survey)에 따르면, 응답자들 대부분은 오픈뱅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 위험이나 보안에 대한 불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신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 » 영국 오픈뱅킹 인식 조사 주요 내용

01

- 데이터 보안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누가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함
-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단·대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식함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 보안에 대한 우려가 오픈뱅킹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가장 큰 원인

02

- 약 22% 응답자만이 오픈뱅킹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함
- 응답자들은 오픈뱅킹이 개인보다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오픈뱅킹에 대해 추가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픈뱅킹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수용성이 증가함

오픈뱅킹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부족하고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

03

- 응답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픈뱅킹의 명확성, 투명성, 간편성임
- 일부 응답자들은 오픈뱅킹 서비스가 가져다 주는 효용이 크지 않다고 생각함



오픈뱅킹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동시에 존재



EU 영국 호주 미국 한국

## 해외 마이데이터 정책 및 금융분야 추진 동향

“

EU GDPR  
2018년 5월 시행 ...  
개인정보 이동권 및  
처리 제한권 신설 등  
개인의 정보 결정권 강화

”

### EU 정책분야 : GDPR을 통한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EU는 과거 1995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인 Data Protection Directive(DPD) 95/46/EC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수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함에 따라 EU 전체에 일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18년 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EU 내 모든 회원국에 시행하였다.

GDPR 제정의 핵심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이다. '개인정보 이동권' 및 '처리 제한권'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프로파일링 거부권', '개인정보 삭제권' 등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판례 및 개별법 등을 기반으로 통용되던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고, 가명 처리된 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정보 대상도 확대하였다. 또한 GDP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인적, 물적, 지리적 범위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정보 주체의 국적과 상관 없이 컨트롤러(Controller,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기업)와 프로세서(Processor, 컨트롤러를 대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사)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 실행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 선정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과징금,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명시하였다. GDPR은 기본적으로 유럽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단일화해서 역내 디지털 경제를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 » EU GDPR 주요 내용

##### 법 적용의 대상

- EU 내 본사를 둔 기업은 물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식별정보 : IP 주소, 쿠키 ID, 시리얼 넘버, 위치 정보 등
- 특별유형정보 : 유전정보, 생체 인식정보 등

##### 위반 시 제재 조항

- 손해배상 : 컨트롤러 · 프로세서에게 위반처리 손해에 대한 책임 부여
- 과징금 : 심각한(일반적) 위반일 경우 최대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4%(2%) 또는 2천만(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위반의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모든 EU 회원국에게 의무화

#### » GDPR상 정보 주체 권리

권리	주요 내용	
신 설	처리제한권	· 본인 개인정보 처리 제한을 요구할 권리 · 단, 공익상 중요 목적일 경우 등 처리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이동권	· 본인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수취할 권리 ·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할 권리
강 화	반대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 상황에 따라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를 언제든지 거부할 권리(프로파일링* 포함)
	삭제권 (잊혀질 권리)	· 본인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 · 단,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 공적 권한, 공익적 목적 등의 경우 제한될 수 있음

Sourc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 \*프로파일링(Profiling) : 개인의 행동·특성에 대한 예측·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의미함



“  
EU PSD2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금융 산업에 적용시킨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  
”

**EU 금융분야 : 금융회사에 오픈 API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의무화**

EU의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 2)는 지급결제 시장의 활성화 및 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GDPR 개인정보 처리요건인 사용자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이동권을 금융 산업에 적용시킨 지급결제서비스 지침이다. PSD2의 핵심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과 같은 계좌기반 지급서비스 사업자(Serving Payment Service Provider)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계좌정보 및 금융정보에 대해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 TPP)의 계좌접근을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EU 내 모든 대형 금융사에게 오픈 API 형태로 고객 금융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PSD2는 계좌정보 서비스(Account Information Services)와 지급지시대행 서비스(Payment Initiation Services)를 지급서비스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크게 계좌정보서비스 사업자(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AISP)와 지급지시대행 서비스 사업자(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PISP)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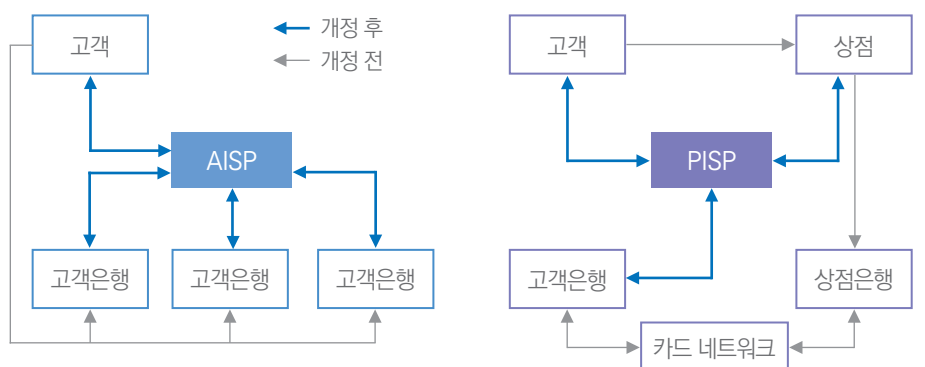
» PSD2에 의한 지급서비스 제공자 및 역할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 (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 TPP)	사용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를 수행
<b>1</b>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AISP)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정보에 접근하여 사용자 통합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b>2</b> 지급지시대행서비스 제공업자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PISP)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이체 서비스 제공

Sourc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PSD2가 제정됨에 따라,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가 독점해오던 고객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통합조회·분석 서비스나 직접 자금을 이체하여 결제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EU 내 새롭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성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AISP · PISP의 도입에 따른 변화



Source : 한국은행(2018.01), 'EU내 MiFID II 및 PSD2 시행과 향후 전망'





## 영국 정책분야 :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Midata 추진

“

영국은 금융 · 통신 · 에너지 부문에서 Midata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

2011년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인 'Midata'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Midata 이니셔티브는 비자(Visa), 구글(Google),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 Lloyds TSB, O2 등 기업을 포함하여 감독기관, 대학교 등 26개 주요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참여 기관들은 Midata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였다.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Midata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가 저조하자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 기업 및 규제혁신법(Enterprise and Regulatory Act)을 개정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Midata의 중점 추진 분야에서 기업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함으로써 데이터 공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4년 4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2013년 BIS는 마이데이터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성격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Midata 이니셔티브에 동참한 26개 조직이 참여하여 마이데이터 혁신연구소(Midata Innovation Lab, MIL)라는 기구를 창립하였다. MIL은 혁신연구소를 표방하며, 금융, 통신, 에너지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였다. MIL이 실증 실험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Mi Finance(개인금융), Stay Safe, Keep Warm, Save Money(에너지 · 복지), Expert Home Mover(개인정보 업데이트), Mi Health(개인 헬스케어), Relative Calm(노인 및 취약계층 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있다. MIL은 개인데이터를 소비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창출되는 경제적 ·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Midata 프로그램의 확산 기회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영국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변화



Source : 한국신용정보원(2018.12), '해외 마이데이터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 MIL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발 애플리케이션

앱	필요 데이터	상세
Mi Finances	· 은행거래 데이터 · 카드 사용내역 · 대출 이자율 정보 등	· 거래데이터 분석 기반 사용자 재무관리 · 채무상환 최적화 방안 추천 및 지출결정 지원
Stay Safe, Keep Warm, Save Money	· 소득 및 복지 관련 데이터 · 주택 유형 등 건축 정보 · 에너지 관련 데이터 등	· 사회 취약층에게 정부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Expert Home Mover	· 가족 구성원 데이터 · 소득 및 복지 관련 데이터 · 주택 유형 등 건축 정보	· 개인이 이사할 경우 기업(통신사, 은행 등)에게 새 주소지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Mi Health	· 체중, 운동, 수면 등 개인 건강 데이터 · 약물, 진단, 처방 등 개인 의료 데이터 등	·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지원 - 개인 주치의 등에게 건강 데이터 제공 - 건강에 좋은 음식, 운동방법 추천
Relative Calm	· 에너지 관련 데이터 · 금융거래 데이터 · 건강 데이터 등	· 가족 · 친지에게 노인 등 취약계층 케어를 위한 정보 제공 - 취침 정보, 실내온도 등 대상자의 생활 정보 제공

Source : 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2013.11), The midata Innovation Opportunity,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영국 금융분야 : 9개 주요 은행에 오픈 API 개방 의무화

“ 영국은 '18년 1월부터 오픈뱅킹 정책 시행, 9개 주요 은행 대상 고객 및 금융상품 정보 개방 의무화 ”

영국은 EU의 PSD2 시행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금융 영역) 정책을 의무화하였다. 2018년 9월 'Open Banking Standard 3.0'을 발표하고 오픈 API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이 요건에 따라 영국의 오픈뱅킹 적용 대상인 은행은 데이터 조회형 API(데이터 조회·전송)와 실행형 API(지급결제·송금 등의 실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2018년도 1월부터 9개의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오픈뱅킹을 시행하였으며, 금융상품 정보도 모두 개방하도록 하였다. 거래내역 등 개인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 정보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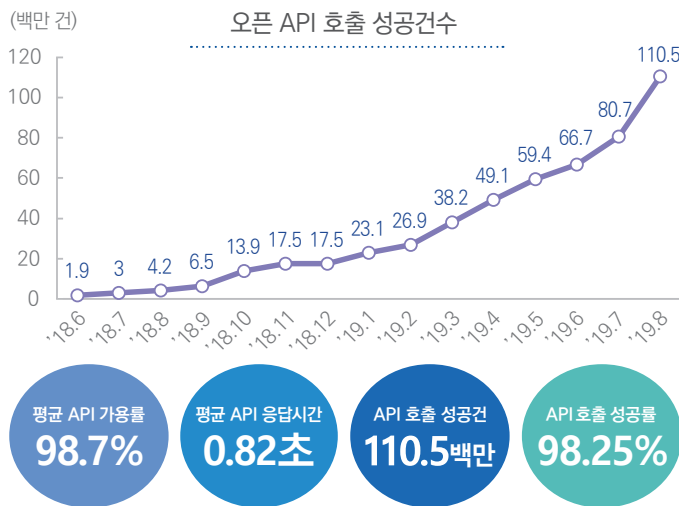
#### 영국 오픈뱅킹 및 EU PSD2 비교

	영국 오픈뱅킹	EU PSD2
적용대상	· 주요 9개 은행(AIB, Bank of Ireland, Barclays, HSBC, Lloyds, NBS, Northern Bank, Danske Bank,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Santander)	· EU 내 전 지급결제 계좌
도입 기간	· 도입 일정(기한)에 맞추어 진행	· 18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API 요건	· CAPIF(Common API Framework) 방식	· 금융회사 자율에 맡김
정보제공 범위	· 거래내역 등 개인의 금융정보 ·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 거래내역 등 개인의 금융정보

Source : 한국금융연구원(2018.12), '오픈 API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은행산업의 혁신전략',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영국 오픈뱅킹은 2018년 1월 13일 시행 이후 참여 기관 확대 등으로 이용 실적이 증가세이다. 오픈뱅킹을 통한 API 호출 건수는 2018년 6월 1.9백만 건에서 2019년 8월 110.5백만 건으로 약 58배 증가하였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 일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포함하여 총 116개의 기관이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로 인가를 받았으며, ABN AMRO bank, AIB Group 외 Cynergy Bank, Mizuho 등과 같은 64개 기관이 계좌제공업자(Account Provider)로 인가받아 총 180개의 기관이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있다.

#### 영국 오픈 API 호출 실적(2019년 8월 기준)



Source : Openbanking.org.uk,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영국 오픈뱅킹 참여 현황

구분	금융회사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 (AISP/PISP - 116개)	
계좌 제공업자 (은행 등 - 64개)	

Source : Openbanking.org.uk,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호주 정책분야 : 정부 주도의 점진적인 데이터 권리 강화 정책 추진

“

호주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 정책 도입으로  
개인의 정보결정권 강화

”

2017년 11월 26일 호주 정부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Consumer Data Right, CDR) 정책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 12월 오픈뱅킹으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규제와 운영 방안을 담고 있는 권고안인 ‘오픈뱅킹 리뷰(Review into Open Banking in Australia)’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에 소비자의 데이터 권한을 반영하도록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에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ACCC는 경쟁 및 소비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CDR 법안(Treasury Laws Amendment 2018)은 경쟁 및 소비자법을 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988)과 호주정보위원회법(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도 개정될 예정이다.

CDR 법안은 소비자 데이터 권리 추진을 위한 13가지 개인정보 보호장치 및 CDR 데이터의 수집·보유·공개·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CDR은 복수의 기관에 의해 감독을 받지만 ACCC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한다. 그러나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호주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였다.

금융 부문은 CDR이 시행될 첫 번째 분야로, 이후 에너지업, 통신업 부문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등 CDR은 점진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도입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추진 중인 CDR이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5년에 걸쳐 9천만 호주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호주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 감독기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호주정보위원회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	데이터 표준기구 (Data Standards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재무성이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 정책을 적용할 산업부문 지정에 대해 자문</li> <li>· 산업별 각 부문의 데이터 권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 제정을 담당함. 단, 규정 제정 시 ACCC는 OAIC, 공공 및 부문별 규제 담당기관과 협의</li> <li>· 데이터 수신자에 대한 인증 기준과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인증 레지스터(Accreditation Register)를 관리</li> <li>·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 정책 적용에 따른 산업 부문별 영향도 파악 및 이를 호주 재무성에 자문</li> <li>· ACCC가 제정을 고려중인 CDR 규정에 대한 영향도 파악 및 이를 ACCC에 자문</li> <li>· CDR 표준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CDR 표준 설정에 참여</li> <li>· CDR 정책 관련 호주 국민과 기업의 민원·불만사항을 일차적으로 처리</li> <li>· 필요 시, 민원·불만사항 해결을 위해 외부 기관(ACCC 또는 타 규제기관 등)과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의 전송(Transmission), 데이터 형식(Format) 및 데이터의 보안(Security)과 관련된 기술 표준 설정</li> <li>· 기술 표준안을 산업 부문별로 최적화</li> <li>· 기술 표준안 설정 시 실무조직과 협의</li> <li>· 지정된 Data Standards Body는 표준안 설정 업무를 3년간 수행</li> <li>→ 2019년 10월 현재 호주의 가장 큰 데이터 혁신 조직인 CSIRO의 Data61이 해당 역할을 수행 중</li> </ul>





### 호주 금융분야 : 조회형 API 4대 은행 선도입 후 점증적 확대

“ 호주는 '19년 7월부터 주요 4대 은행에 오픈뱅킹 의무화... 적용 대상 및 제공 데이터 범위 확대 추진 ”

오픈뱅킹 시행에 앞서 호주정부는 공개적 논평을 통하여 74건의 상세 의견을 접수·검토 하였으며, 2017년 12월 발간된 오픈뱅킹 리뷰 보고서는 호주정부에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가장 적절한 모델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안하여 이를 호주정부에 권고하였다. 보고서는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자 데이터 권리에 대한 법적·규제적 준비절차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담았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은행 부문의 실질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호주 정부는 보고서 권고안을 수용하였고, 2019년 7월부터 오픈뱅킹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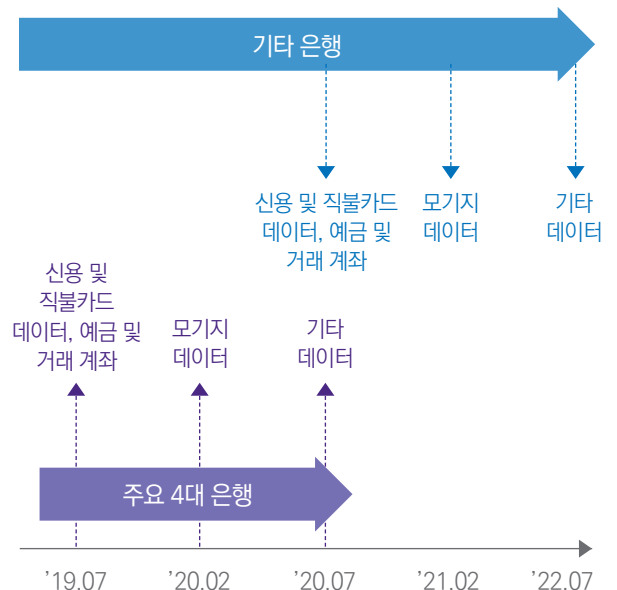
호주는 정해진 타임라인에 의해 오픈뱅킹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Phased Approach)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오픈뱅킹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4대 은행 (Commonwealth, Westpac, ANZ, NAB)에 먼저 오픈뱅킹을 적용하고, 신용·직불카드, 예금 및 거래계좌 데이터를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관련 데이터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4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보 공개 범위도 계좌 및 거래정보, 은행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도 포함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호주의 오픈뱅킹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 은행정보 개방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점과, 개방 의무화 대상에 지급결제·송금 서비스를 위한 실행형 API는 제외하고 데이터 조회·전송을 위한 조회형 API만으로 한정 하였다는 점이다.

금융분야의 오픈 API 등을 포함한 기술 표준안 개발은 데이터 표준기구(Data Standards Body)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 재무성(Department of the Treasury)은 데이터 표준 기구로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를 지명하였다. 호주의 오픈뱅킹은 2020년 7월부터 금융권의 모든 상품 및 거래데이터, 고객데이터 등에 대한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호주 오픈뱅킹 공개 대상 정보

호주 오픈뱅킹 제공 데이터 범위			
고객데이터	거래데이터	신원인증결과	상품데이터
고객이 은행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정보 (Customer-Provided Data) · 고객 주소 · 연락처 · 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 · 지급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 (수취인 목록) 등	고객의 거래 결과 생성되는 데이터 (Transaction Data) · 예금·인출·송금 정보 · 기타 거래 · 계정 잔액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 정보 등	고객확인 (Know Your Customer, KYC) 관련 인증 결과 정보 (Identity Verification Assessments) · (인증을 위해 고객이 제공한 문서가 아닌) 고객 신원 인증 평가 결과	은행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Product Data) · 상품 가격 · 수수료 · 기타 요금 정보 등

#### 호주 오픈뱅킹 도입 Timeline



Source :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7), Review into open banking,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05), Consumer data right,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EU 영국 호주 미국 한국

## 미국 정책분야 : 연방정부 관리대상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 개방

“ 미국은 스마트공시 제도를 추진 중이며 현재 보건·에너지·교육 부문의 개인정보 공개·활용 ”

미국은 유럽의 GDPR과 같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일반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정부별로 관리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는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미 행정부는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스마트 공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민관 협력관계 및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0년 9월 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 실행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시 확대를 포함하여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011년 9월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연방 기관에 스마트 공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연계하여 미국 국립 과학기술 위원회(U.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스마트 공시 전담팀을 설립하였다.

미 행정부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 에너지, 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개인 건강 데이터의 경우 퇴역군인, 의료보험대상자 등 개인은 의료기관 웹사이트에서 '블루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의료기록에 접속하고 이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현재 블루버튼의 상호 운용성과 사용자 인증을 개선하기 위해 API 방식의 블루버튼 2.0 이니셔티브(Blue Button 2.0 Initiative)를 추진 중이며, 약 5,300만 명의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청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에너지 데이터는 소비자가 '그린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 및 요금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당 서비스는 2011년 9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00만 명 이상이 사용했다. 개인 교육 데이터의 경우, 사용자는 '마이스튜던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양식을 만들거나 또는 본인의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Federal Financial Aid)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학금 찾기 또는 대출상환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 » 미국 스마트 공시 서비스

	블루 버튼(의료·건강)	그린 버튼(에너지)	마이스튜던트 버튼(교육)
법적 근거	·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에너지 자립 및 보안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 가정 교육의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활용	· 개인 의료데이터 열람 및 다운로드 · 긴급 연락처, 의료팀 · 병력, 투약 정보는 본인 직접입력	· 실시간 전력사용량 공개 · 캘리포니아주 1500만 KW 전력수요 절감	· 교육데이터· 교육비 대출· 보조금 데이터 열람 및 다운로드 - 학생본인· 부모 - 교육정보· 학자금 대출 사이트
참여기관	· 재향군인회, 국방부, 보건후생부	· 에너지부, 환경보호청	· 교육부
제3의 서비스 적용사례	· 블루 버튼 플러스 - 제3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인간가독+기계가독)로 의료데이터 다운로드 · 블루 버튼 커넥트 - 참여 기관 및 기업별로 개인의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공개 - 개발자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지원	· PEV4M - 전기 자동차 비용 절감 응용 프로그램 제공 · Unplug Stuff - 전력 낭비 시각화 프로그램 제공 · Leaffully - 가정의 전력 사용량 시각화 제공	· 데이터 표준화 및 접근성 문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이슈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않음



## 미국 금융분야 : 민간 차원의 자율적 데이터 공유 추진

“미국은 오픈뱅킹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장의 자발적 정보 공유 권장”

미국은 2010년 7월에 발효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사용 권한을 보장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거래정보 및 관련 수수료 등 정보 포함)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는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하도록 금융회사에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은 현재 부재하며, 오픈뱅킹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기관 가운데 소비자 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과 금융서비스정보공유분석센터(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FS-ISAC)는 모두 오픈뱅킹 시행에 대해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 CFPB는 제3자 기업이 금융회사의 금융 데이터에 접근할 때 개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데이터 공유 원칙을 발표했으며, FS-ISAC는 토큰화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오픈 API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 내 금융 데이터 공유 움직임은 민간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1997년 마이크로소프트, 인튜잇, 체크프리는 금융회사 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처리 방식을 통일시키기 위해 Open Financial Exchange(OFX)를 표준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00년 이후 OFX는 미국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금융 데이터 액세스 표준안으로 부상하였으며, OFX를 채택한 금융회사는 2005년 3,000여 개에서 2015년에는 7,0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개인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대형 은행들과 핀테크 기업 등이 제휴하여 2018년 Financial Data Exchange(FDE)를 설립하였으며, 2019년 7월 OFX도 FDE에 동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FDE는 FS-ISAC의 자회사로서, Durable Data API(DDA)를 표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내 API 표준안 개발을 주도하는 또 다른 움직임은 민간 금융협회인 전자결제협회(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 NACH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금융 산업 내 API 표준안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NACHA는 API 표준화 그룹(API Standardization Industry Group, ASIG)을 설립하였다. ASIG는 ‘API 표준화(API Standardization-Shaping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를 발표하여 API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IFX 포럼(Interactive Financial eXchange Forum, IFX Forum)과 제휴하여 Afinis를 조직하였고, 플랫폼 전반에 걸쳐 표준안 개발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 » 오픈 API 표준안 관련 주요 민간단체

	Financial Data Exchange(FDE)	Afinis
목표	· 금융 산업 내 개인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안을 개발하여 새로운 금융 혁신 창출	· 운영환경 및 플랫폼 전반에 걸친 표준안 개발
참여기관	· OFX, BOA, 씨티, JP모건, 인튜잇, 요들리 등 47개 핀테크 · 금융회사 등 참여(2019년 4월 기준)	· ASIG, IFX Forum을 포함한 44개 기업 · 125명의 개인회원 참여 (2019년 7월 기준)
개발 API	· Durable Data API(DDA) : DDA는 OFX를 통한 데이터 교환방식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 · Fidelity Investments를 포함한 대형 금융회사들이 DDA 채택	· 거래상태 : 거래 지시자가 계정입금 · 인출 여부 실시간 확인 · 전자자동결제(Automated Clearing House, ACH) : 표준화된 방식으로 ACH 지불 요청 전달 · B2B 호환(개발 중) : ACH를 통해 타 회사에 지급하기 위해 지급정보 · 송금조건 확인



EU 영국 호주 미국 한국

##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 및 금융분야 추진 동향

“

국내 현행 개인정보 관련 규제 체계상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이동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

”

### 한국 정책분야 : ① 데이터 이동권과 개인정보의 활용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규제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며, 각 산업별(금융, 의료, 교육 등)로도 개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체계가 복잡다기 하며 중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 능력을 파악할 목적으로 수집·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모두 적용 받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명확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선택적 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비식별화된 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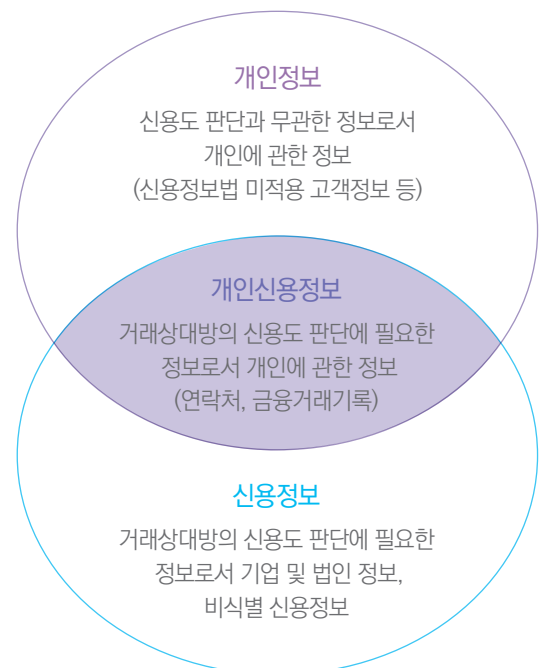
이러한 규제 체계로 인하여 다수의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 가능 범위도 명확히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익명 또는 가명정보와 같은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관련 법률도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 »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차이



Source : 금융위원회(2017),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 조화를 추구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 중 ”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과 개인의 정보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정보 활용 가능성 증대, 개인정보 활용에 근거한 신산업 육성 및 사회적 후생 증가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데이터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1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적절한 안전조치하에서 가명정보를 산업적·과학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 결합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허용되도록 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와 관련한 여러 개별법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정비하였다. 개별법별로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하였다. 셋째,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형사처벌 외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 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판단 기준(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명확히 하였다.

» 2018년 11월 발의 데이터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소관 법령	소관부처	법률 목적	개정안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적용 대상, 수집 및 이용 기준 정의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화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 허용 ·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및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금지 ·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활발히 이용하도록 유도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개인의 신용 판단 시 필요한 신용정보의 이용 범위와 수집, 관리방법 등을 규정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 신용정보 관련 산업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관련 · 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Source : 관계부처합동(2018.11),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및 각 법률 발의안,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EU 영국 호주 미국 한국

## 한국 정책분야 : ② 5대 실증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은 금융 · 의료 ·  
에너지 · 유통 · 기타  
5개 분야에서 실증  
서비스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① 제도 및 기술기반 확보, ② 본인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③ 서비스 및 적용 다양화라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활용성이 높은 금융이나 통신 분야에 우선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적용하는 한편, 에너지, 유통 등의 분야로 점차 확대하고 향후 분야간 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2018년 금융 · 통신 2개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필두로, 2019년에는 의료 · 금융 · 유통 · 에너지 · 학술 5대 분야에서 8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에 착수하였다.

금융분야에서는 NHN페이코가 6개 금융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금융분야에서 유일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019년 12월 동 컨소시엄은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API 구축을 완료하고, 이에 기반해 ‘페이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최초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① 보험상품 보장내역, 투자상품 수익률 정보 등 모든 제휴 금융회사의 ‘금융정보 통합조회’, ②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데이터 내려받기’, ③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 이력에 대한 ‘데이터 영수증’, ④ 제휴 금융회사 간 상품 추천이 가능한 ‘금융상품몰’ 서비스로 구성된다. 금융 컨소시엄을 포함하여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를 수행하는 각 분야의 8개 컨소시엄(수행기관)은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표준, 보안, 법률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친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 » 2019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분야	과제명	수행기관		서비스
		주관	참여	
의료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름정보기술, CJ프레시웨이, 에스푸드	건강 검진 · 처방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영양 건강식단 추천
	응급상황을 위한 개인건강지갑 서비스	브이티더블유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응급환자의 응급 진료기록 및 일상 생활 속 건강기록 보관, 개인건강지갑 제공
	MyHealth Data 플랫폼 및 서비스 실증	서울대학교병원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메디블록, 웰트, 삼성화재	환자 동의에 따른 개인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 개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건강증진 코칭
금융	본인정보 통합조회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NHN페이코	KEB하나은행, 한화생명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신한금융투자, 웰컴저축은행	금융 · 비금융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에너지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다음소프트	세중시, 에이엠에이닷컴, 유디아이	세중시 주민 대상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수급 예측, 맞춤형 서비스 구현
유통	개인데이터 저장소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관리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	신한카드	사업장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 개선, 개인 대상 할인 · 이벤트 정보 제공
	소상공인 성장 지원 문서 · 자금 플랫폼 서비스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전자세제협회,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 기용정보통신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을 위한 정책자금 매칭 등 종합경영관리 서비스 제공
기타	연구자를 위한 매칭 및 분석 서비스	코난테크놀로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수집된 학술연구자 정보를 활용하여 저작물 통합관리



“ 금융 산업 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

### 한국 금융분야 : 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초석 마련

국내에서는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서는 ①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②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 ③ 정보보호 내실화라는 3대 추진전략하에 10개의 세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고,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신용정보 산업 및 신용정보 인프라 선진화 방안,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기반으로 2018년 1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김병욱 의원 외 12인)되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신용주체의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큰 골자로 한다.

데이터 활용성 제고 차원에서 ①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 개념을 정의하고, ②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시장 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포함),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3자가 보유한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도록 하는 한편, 결합된 데이터를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④ 가명정보 처리나 정보의 결합에 대해 안전 조치 확보와 이를 위반 시 벌칙 부과를 규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산업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 가명정보 개념 및 데이터 전문기관 도입
-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이용·결합의 법적 근거 마련
-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 대책 의무화 및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재식별 시 징벌적 과징금 및 형벌 부과

##### ☑ 신용정보 관련 산업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관련

-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행 신용조직원무를 업무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마이데이터업 신설 등)
- 신용조회 회사의 경우 영리 목적의 검업 업무 금지에 대한 규제 폐지
- 신용정보 회사 등의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및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 등

##### ☑ 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도 도입(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및 금융권 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 도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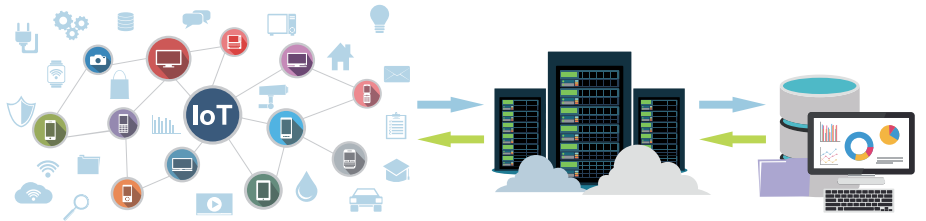
금융 산업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업, 정보관리 및 데이터 제3자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허가제로 도입 예정

”

또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① 현행 신용조회업의 정의를 바꾸어,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부 구분하고, ② 비금융정보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등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③ 신용평가업의 지배구조와 책임성,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규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분야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 하였다. 정보이동권의 도입으로 신용정보주체(개인)는 ① 금융회사, 정부 · 공공기관 등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②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 평가(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 프로파일링) 실시 여부 · 자동화 평가 결과 · 평가 주요기준 · 평가에 활용된 기초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 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능동적으로 본인 정보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 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GDPR과 같이 전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신용정보만 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 범위

### 고유 업무 : 개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래 내역
-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금 계좌정보
- 보험사의 보험계약 정보(단, 보험금 지급정보는 제외)
-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 CMA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주식, 펀드, ELS 등)의 종류별 총액 정보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내역 등의 신용정보

### 부수 업무 : 정보관리 및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 정보계좌 업무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행사 업무
- 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제3자 제공업무

### 경영 업무 :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 · 일임업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의 금융상품자문업

Source : 금융위원회(2018.0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 마이데이터 사업자 요건

분류	주요 내용
허가제	· 정보보호 · 보안, 경영 · 지배주주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필요
자본 요건	· 최소자본금 5억 원으로 진입장벽 최소화 -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인적 요건	· 전문인력 요건 별도로 없음 - 단,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은 의무적으로 보유
물적 요건	·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 시설 구비
금융회사 출자의무	· 개인 CB업과 달리 금융회사 50% 출자의무 없음

Source : 금융위원회(2018.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마이데이터 사업자 제공  
데이터 범위, 표준화  
API 구축 · 수수료 등에  
관한 논의 진행 중 ”

**한국 금융분야 : ②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마련**

상기 논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신용관리 · 자산관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업)에 대한 법률적 근간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금융 산업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①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개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②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③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 · 보안은 강화하고, ④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행사 및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등을 부수 · 겸영 업무로 허용하며 업무범위를 정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2018년 7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통해 ①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법률상 규율체계 도입, 개인의 정보권한과 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적 산업으로 육성, ②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최소화, ③ 정보보호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제도적 · 기술적 여건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개인정보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역량과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허가제로서 최소자본금 요건을 5억 원으로 하였다. 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신용정보사와 같이 신용정보 관리인 보유, 정보 관리를 위한 기술적 · 물리적 보안시설 구비는 필수 요건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2월부터 ‘데이터 표준 API’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여,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 나아가 정부기관, 통신사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API 표준을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2019년 5월부터 금융 · 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데이터 제공 범위 및 비용, API 규격, 보안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API를 통한 데이터 유통 · 활용 · 분석 시장이 원활히 형성될 필요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 · 분류기준 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정되었던 해외 마이데이터와는 달리, 국내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금융투자사 등 모든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가 특히 주요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

» 데이터 표준 API 1차 워킹그룹 주요 논의 사항

주관조직	논의 주제	상세
서비스분과 (서비스 운영 관련)	정보 범위	·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카드사, 금융투자사 등)가 제공하는 신용 및 금융상품 정보 범위 · 핀테크 기업 등이 요구한 800여 개 정보 중 200여 개 제공 검토 중(민감정보 등 제외)
	API 수수료	· 금융회사 등이 구축한 API 수수료 산정 기준 · 정보 주체는 무료로 서비스 이용 → 개인정보 이동권의 원활한 행사 보장
기술분과 (서비스 개발 관련)	API 규격	·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원활한 API 구축을 위한 표준안 · API 요청방식, 메시지 형식, URL 구조 등 표준화된 API 개발 형식 지정
	인증 수단	· 정보 주체 전자서명을 통한 개별적 인증이 기본 방향 · 생체정보 등 금융회사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인증수단 허용

Source : 금융위원회(2019.10),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국내 은행권 중심의  
오픈뱅킹은 '19년 12월  
본격 시행, 은행권과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 격화 예상 ”

### 한국 금융분야 : ③ 지급결제 중심 오픈뱅킹 12월 전면 시행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금융데이터 개방의 상징적인 주요 정책은 오픈뱅킹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8월 기존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구조하 폐쇄적인 금융결제시스템을 개방하여 금융 산업의 경쟁 촉진과 혁신성 제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공동 오픈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구축한 바 있다. 16개의 국내 은행과 중소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 공동 결제시스템은 ① 7개의 오픈 API(서비스 API 5개, 인증·관리 API 각각 1개)와 ② 개발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구성되어 있다.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권을 모두 아우르는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시중은행들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은행별 전산표준이 상이하여 데이터 호환 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을 통해 은행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공동 결제시스템의 이용 대상이 중소기업 및 핀테크 기업 등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핀테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규모가 있는 핀테크 사업자나 대기업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플랫폼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출금 및 입금 이체 API 이용 수수료가 건당 각각 400~500원의 수준으로 책정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9년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 공동 결제시스템에 모든 핀테크 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출금·입금이체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 대비 약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은행권 공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하여 사실상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보안원의 보안점검에 통과한 기업에만 플랫폼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공동 결제시스템의 보안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 »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 주요 개선사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괄호는 우대비용*)	
수수료	이체	출금이체	500원	50원(30원)
		입금이체	400원	40원(20원)
	조회	잔액조회	10원	10원(5원)
		거래내역조회	50원	30원(20원)
		계좌실명조회	100원	50원(30원)
		송금인정보조회	300원	50원(30원)
참여기관	이용기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및 은행	
	제공기관	일반은행(16개)	인터넷전문은행(2개) 추가	
운영시간	정비시간	1시간	10분(은행은 20분)	
보안	방안	결제 사업자의 보안 역량에 따라 운영방식에 차등을 둠	보안점검을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참여 허용	

Source : 금융위원회(2019.10),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 \*우대비용 적용기준 : (이체) 월 거래금액 100억 원 이하, (조회) 월 거래건수 10만 건 이하



“  
**오픈뱅킹 시범운영 후  
 약 1달여간 1인당  
 2.3개 계좌 등록,  
 일평균 165만 건 이용**  
 ”

오픈뱅킹의 전면 시행에 앞서 2019년 10월 30일부터 10개 은행은 타행계좌 조회·이체 서비스를 중심으로 오픈뱅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고객 인지도를 제고하고 준비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보완하도록 하였다. 10개 은행의 시범실시 이후 일주일(10월 30일~11월 5일) 동안 102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183만 계좌가 등록되고, 동기간 오픈뱅킹 총 이용건수는 1,215만 건을 기록하였다. 약 1달(10월 30일~11월 28일) 동안의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총 239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총 551만 계좌를 등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서비스 총 이용건수는 4,964만 건에 이르고 있다. 기능별(API 종류)로는 총 이용건수의 약 80%(3,972만 건)가 잔액조회에 이용되고 있다. 2019년 11월 28일까지 1인당 2.3개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하고, 일 평균 165만 건이 이용되는 등 오픈뱅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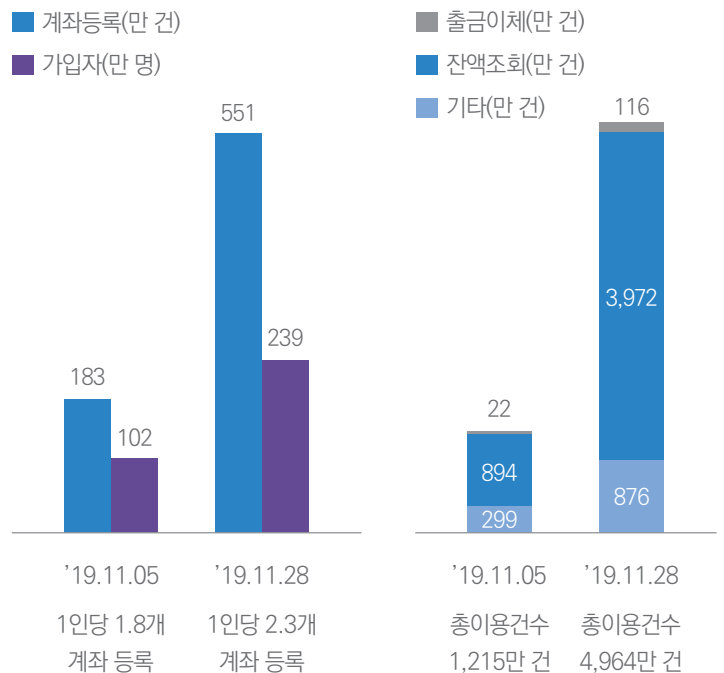
오픈뱅킹 시범기간은 시스템 성능·과부하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보안사항을 점검·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9년 12월 18일 본격적으로 오픈뱅킹이 시행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8일 기준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151개 등 총 169개 기관이 오픈뱅킹 이용을 신청하였으며, 새롭게 이용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 123개 중 88개가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본격적인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로 지급결제시장의 효율성 증대,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개발의 활성화,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 강화 및 본인 금융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가 예상된다. 오픈뱅킹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① 전자금융업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②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조회·이체 API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여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오픈뱅킹 시범실시 참여 은행·애플리케이션 현황

은행명	오픈뱅킹 제공 모바일 앱
NH농협	올원뱅크
신한	쏠(SOL)
우리	WON뱅크
KEB하나	하나원큐
IBK기업	i-ONE뱅크
KB국민	KB스타뱅킹, 리브
BNK부산	썸뱅크
제주	jBANK
전북	뉴스마트뱅킹
BNK경남	투유뱅크

» 오픈뱅킹 등록·가입 및 API 이용건수(누적)



Source : 금융위원회(2019.11), '오픈뱅킹 시범운영 현황 및 오픈뱅킹 공식 출범식',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 금융위원회(2019.11), '오픈뱅킹 시범운영 현황 및 오픈뱅킹 공식 출범식',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참고] 각 나라별 마이데이터 정책 및 금융분야 추진현황 비교

		EU	영국	호주	미국	한국
정책	이니셔티브	-	· Midata 프로그램	· 소비자 데이터 권리 정책(Consumer Data Right, CDR)	· 스마트 공시 (Smart Disclosure)	· 본인정보 활용지원 (MyData) 사업
	추진 목적	· EU 역내 개인정보 법제 단일화 및 디지털경제 활성화	· 공정한 경쟁 촉진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	· 고객중심주의 · 시장경쟁유도 · 기회창출 · 효율성 · 공정성 확보	· 데이터에 기반한 사용자의 의사결정 지원	·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경제로 전환
	주관 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기업혁신기술부(BIS) · 영국경쟁관리당국 (CMA)	· 호주 재무성 (Department of the Treasury)	· 주관정부기관 : 관리예산처(OMB) · 국립과학기술위원회 (NSTC)	· 금융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민관 협의체	-	· Midata Innovation Lab	· Advisory Committee (데이터 표준기구에 업계, 기술 관련 자문)	· Green button Alliance (에너지부, 환경보호청) · Blue button Alliance (재향군인회, 국방부, 보건후생부)	-
	법안/정책	· EU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 기업 및 규제혁신법 (Enterprise and Regulatory Act) ·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 소비자 데이터 권리 법안(Treasury Laws Amendment 2018)	· 오픈정부 실행계획 (U.S.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2011)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타	금융 지침	· PSD2 (Revised Payment Service Directive)	· PSD2 · Open Banking Standard 3.0	· 오픈뱅킹 리뷰 (Review into Open Banking in Australia)	·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Act) - 오픈 API 의무화 명시하지 않음	· 신용정보법 개정안
	데이터 공유 방안	· 오픈 API 의무화 - 조회형 API - 실행형 API	· 오픈 API 의무화 - 조회형 API - 실행형 API	· 오픈 API 의무화 - 조회형 API	· 자율에 맡김	· 공동은행플랫폼 - 조회형 API - 실행형 API · 그 외 은행 개별적으로 오픈 API 플랫폼 제공 (공개범위 자율적)
	데이터 개방 범위	· 거래데이터	· 거래데이터 · 금융상품 데이터	· 거래데이터 · 금융상품 데이터 · 고객데이터 · 신원인증정보	· 자율에 맡김	· 공동은행플랫폼 : 거래데이터 · 전 금융권 마이데이터 : 범위 설정예정
	적용 대상	· EU 내 전 지급결제 계좌	· 영국 주요 9개 은행이 선도입 · 2019년 10월 기준 25개 주요 은행 도입	· 호주 주요 4개 은행 선도입 후 단계적으로 전 은행에 도입	· 자율에 맡김	· 공동은행플랫폼 : 일부 은행 및 중소형 핀테크(2016.08) → 은행(인터넷전문은행) 및 모든 핀테크 사업자 (2018.12) · 전 금융권 마이데이터 : 전 금융권 적용예정
	도입 기한	-	· 2018년도 1월	· 2019년 7월 : 신용 · 직불카드 · 2020년 2월 : 주택담보대출 · 2020년 7월 : 기타	-	· 공동은행플랫폼 : 2019년 12월 18일 오픈뱅킹 시행 · 전 금융권 마이데이터 : 미정
	표준안	· 자율에 맡김	· 표준개발기관 (Standard design authority - BEIS, DCMS, ICO, OFgem)	· 데이터 표준기구 (Data Standards Body - CSIRO의 Data61)	· 민간기구 주도 - Financial Data Exchange(은행 및 핀테크 기업) - Afinis(ASIG, IFX Forum)	· 공동은행플랫폼 : 7개의 표준 API · 전 금융권 마이데이터 : 데이터표준 API 1, 2차 워킹그룹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정책적 시사점

“  
 오픈뱅킹 확대 기조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준비 필요...  
 그러나 대중의 신뢰  
 확보를 위한 보안정책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  
 ”

### 금융권 전반 오픈 API 확대 대비 세부 사항 마련

국내에서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일차적으로 은행권 공동 결제 시스템을 통한 오픈뱅킹을 필두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12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국내 오픈뱅킹은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보 공개의 범위가 상품정보 등은 제외되고 거래데이터로만 국한되었다. 그리고 데이터 개방의 대상이 금융권 중 은행권으로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국내 오픈뱅킹은 '금융 데이터의 개방'을 의미하는 오픈뱅킹보다 좁은 개념이며,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떤 단계이다. 국내 금융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개방되는 정보의 범위도 금융상품정보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금융데이터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마이데이터의 경우 개방되는 API 종류와 데이터의 범위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인 표준안(공개 데이터 범위, 오픈 API 표준화 방안, API 이용에 대한 과금 체계, 보안사고 등 피해발생 시 보상방안 등)이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여 마이데이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통해 서비스 운영·개발 관련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기준안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 시 논의를 통해 확정된 사안을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등 법적·기술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만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오픈뱅킹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중의 신뢰에 기반한 정책 추진 및 벤치마킹 필요

금융은 결제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산업인 만큼 고객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개인데이터를 개방하여 산업을 활성화하는 마이데이터는 금융분야의 경우 다른 어떤 부문보다 대중의 강한 신뢰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2018년 9월에 시행된 오픈뱅킹에 대한 영국인들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영국인들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안 및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불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안은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보안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잠재적 보안사고에 대한 법적·기술적 대비책과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인, 기업, 정부 등 각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제도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다양한 산업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오픈뱅킹을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이를 보완·개선하여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대비 기존 금융사의 대응 필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금융 회사의 고객데이터에 대한 독점 현상은 사라지고, 업권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 전 금융업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사업자(핀테크 기업 등)의 경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 국내 금융권에 적용될 마이데이터는 적용대상과 정보 공개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우선적으로 마이데이터 시행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제공자인 기존 금융회사는 우선적으로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및 보안 관련 점검을 실시하여 고객의 정보 이동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정보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하드웨어상의 강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기술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 기반의 자체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동 보고서의 2장에 담아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 Thought Leadership II

# 선도적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심층 분석



## 마이데이터를 이끄는 기업들



차별화된 서비스를  
토대로 금융 혁신 이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주목해야 ”

### 금융 혁신을 이끌고 있는 선도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제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른바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는 혁신적이고 편의성이 큰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철학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2018)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유형은 크게는 (1) 신용정보 통합조회, (2)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3) 정보관리 및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 등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①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② 정보계좌 · 정보관리, ③ 데이터 분석 · 컨설팅, ④ 데이터 분석결과와 제3자 제공, ⑤ 투자 자문 · 일임업, ⑥ 금융상품자문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중 특정 한가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단순히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를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여러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를 일으킴으로써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이끌고 있는 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특화된 선도 기업들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들의 사례(Business Case)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자들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이들의 사업 운영 방식이 왜 시장에서 작동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왜 소비자들이 호응하는지 파악해 보는 것은 앞으로 본격화될 데이터 경제를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진 기업에 대한 사례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세부 사업자 업무 유형별로 각 유형에 특화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앞서 기술하였듯이 단일 업무유형에 한정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특정 업무 유형에서 매우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타 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그 업무 유형에 특화된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부문에서는 민트(Mint), 데이터 분석 및 상품추천 등 자문업 부문에서는 핑안보험그룹(Ping An Insurance), 마지막으로 정보계좌 및 데이터 제3자 제공 업무 부문에서는 디지미(Digi.me)를 대표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 》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 영역

		마이데이터 산업(신용정보 관리업) 관련 업무					
		신용정보 통합조회	부가서비스 제공 금융업무		정보관리 및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		
마이데이터 각 업무영역별 대표 기업		개인신용 통합조회	투자자문/ 일임	상품추천 등 자문	데이터 분석	정보계좌 / 정보관리	데이터 제3자 제공
1	“편의성이 최적화된 재무관리서비스” <b>민트</b>	✓		✓	✓		✓
2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화된 금융서비스” <b>핑안보험그룹</b>		✓	✓	✓		✓
3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즈니스에 구현한 개인데이터 저장소” <b>디지미</b>					✓	✓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세부적인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는 요들리(Yodlee),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 너드웰렛(Nerd Wallet)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트를 대표적인 특화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유는 거대 경쟁사가 개인 금융 서비스 시장의 80% 이상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민트는 차별화된 서비스 편의성으로 사용자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킨 가장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 및 상품 추천 등의 금융자문업무는 핑안보험그룹이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 중 극히 일부이며, 해당 업무가 핑안보험그룹이 제공하는 대표 서비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핑안보험그룹을 해당 업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업이 보유한 플랫폼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데이터를 활용·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역량이 매우 탁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정보 관리 및 데이터 제3자 제공 업무에 특화된 대표기업으로는 디지미(Digi.me)를 선정하였다. 디지미는 2009년 영국 기반으로 설립되어 개인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tore, PDS)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디지미는 프라이버시(Privacy)와 안전(Security)을 확보한 윤리적 데이터 공유(Ethical Data Sharing) 플랫폼을 지향하는 가운데,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공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더불어 금융정보를 비롯하여 의료, 건강 정보 등 수집대상 정보의 범위와 확장성에 있어서도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 편의성이 최적화된 재무관리서비스

“  
민트 : 개인 금융데이터  
활용에 동의 시, 모든  
금융정보를 가시적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재무관리서비스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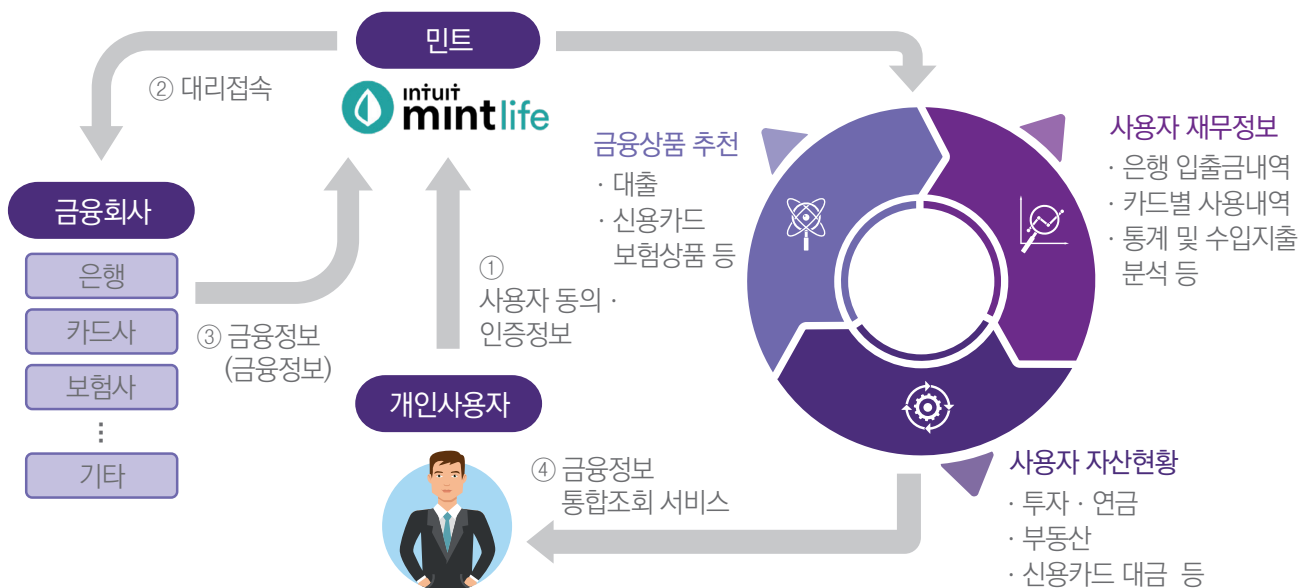
### 가장 대중적인 재무관리서비스 플랫폼, 「민트」

민트(Mint)는 Money Intelligence의 줄임말이며,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민트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손쉽게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이다. 민트는 2007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된 지 불과 약 2년 뒤인 2009년 11월, 약 1억 7,000만 달러(약 1,800억 원)라는 엄청난 인수 금액을 기록하며 경쟁사였던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 인튜잇(Intuit)에 의해 인수되었다.

신용정보 통합서비스가 있기 전까진 사람들은 본인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이용하는 개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일일이 접속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계정의 입출금 내역이나 카드사용 내역, 또는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이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을 쏟아야만 했고, 이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었다. 이것이 개인 신용정보 통합 서비스가 출현하게 된 배경이다.

민트는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투자내역 등 개인사용자의 다양한 금융정보 및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하여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용자가 은행계정을 민트와 연동하면 계좌 입출금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민트는 거래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신한다. 민트는 집계되는 데이터를 깔끔하고 직관적인 통계나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의 소비패턴을 보여준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개인의 투자내역, 기타 금융계좌 또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연동만 완료하면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인 금융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정보 및 재무 상황을 편의성 및 가시성이 최적화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 » 민트의 개인 신용정보 통합서비스 구조



“

민트 : 후발주자로서  
기존 서비스의 불편함과  
한계에 집중 ...  
자동 범주화 기반 서비스 등  
우수한 고객경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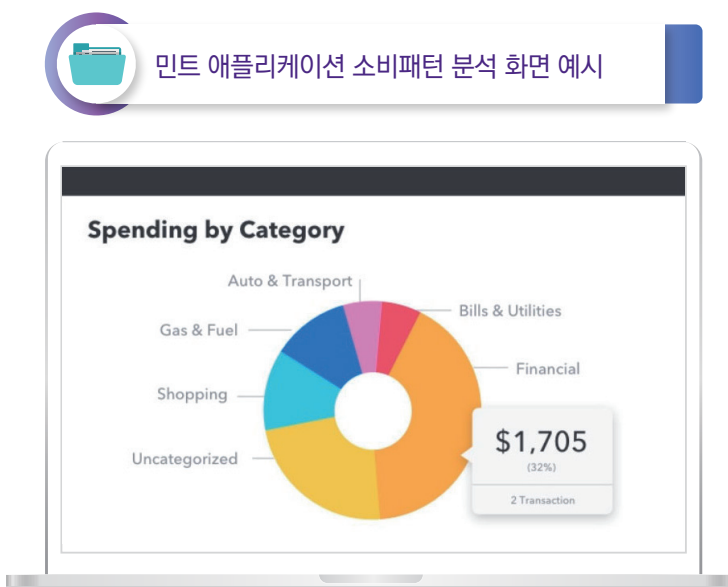
”

### ① 사용자의 기대와 경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갭에 집중

사실 개인 신용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 최초의 회사는 민트가 아니었다. 민트가 서비스를 런칭하기 이전에도 시장에는 이미 퀴크(Quicken Online)의 인튜잇사, 머니(Money Online)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다. 특히 퀴크은 2008년 기준 약 80%의 시장점유율로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퀴크의 경우 사용자의 재무현황 및 소비패턴 분석을 위해 개별 거래데이터를 쇼핑, 유류비, 교통비 등의 소비 항목으로 자동 분류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며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미분류 비용(Uncategorized Expenses)으로 처리되었다. 퀴크 사용자들은 미분류 비용을 수기로 일일이 분류해야 했으며, 이는 매우 불편하고 소모적인 작업이었다. 이에 반해 민트는 미국 표준산업 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IC) 코드 기반의 자동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약 90% 이상의 뛰어난 정확도를 가진 자동 분류 기능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편의에 따라 범주의 명칭을 바꾸거나 분류 체계를 개인 선호를 반영하여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였다.

민트가 기존의 쟁쟁한 경쟁자들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성품의 불편함과 한계에 주목하고 이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민트는 경쟁사 제품의 미흡한 거래 분류 기능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과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확도가 매우 높은 분류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탑재하였고 자동화 범위를 최대화하였다. 이렇게 자동화된 서비스는 '고객이 해야만 했던 일', 즉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제거하여 고객의 수고와 번거로움은 대폭 감소 시켰고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민트의 차별화된 자동 분류 기능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민트가 기존 타사 대비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로 이어졌고 바이럴 마케팅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 » 민트의 거래데이터 자동 범주화 기능



SIC코드 기반 특정 산업분야 및  
특정 지역에 위치한 기업 식별

사업체가 속한 산업분야를 사용자 거래데이터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

사용자 편의에 따라 거래 분류 체계 편집 가능

가시성 · 직관성이 높은 분석 화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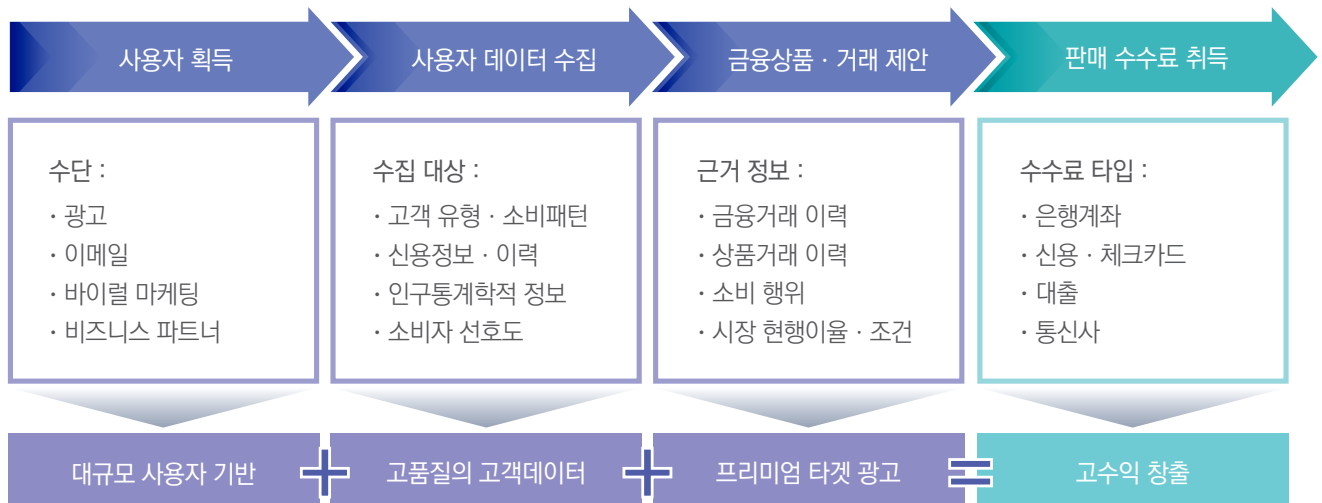
사용자의 '수고'를 제거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 확대

“  
**민트 :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

② 거래 당사자 모두가 돈을 버는 수익 모델

민트는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등 민트의 플랫폼에서 사용자에게 타 금융회사의 상품을 추천한다. 소비자가 민트를 통해 금융상품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단순 추천이 아니라 민트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 사용 중인 금융상품보다 사용자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하는 상품을 제시한다. 게다가 해당 상품으로 교체하면 사용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즉,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 대신 다른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바꾸면 얼마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다. 사용자는 더욱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올리고, 민트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민트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윈윈(Win-Win) 전략을 수익모델로 구현하였다.

» 민트의 수익 모델



Source : Mint Pitch Deck,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민트의 판매료 수익은 사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민트에게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민트 이전의 대표적인 개인 금융서비스 소프트웨어인 퀵이나 머니의 경우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유료 서비스는 그 당시 매우 일반적이었고 당연한 개념이었다. 퀵 사용자들은 상품 라인업 중 가장 기본적인 퀵 베이직(Quicken Basic)을 구매하기 위해 약 30달러의 돈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민트는 일부 고급기능을 포함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기능적으로 압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유료 서비스가 보편적이었던 그 당시에 무료 서비스는 엄청난 경쟁력일 수 밖에 없었다. 사용자의 선택은 아주 명확했다. 2009년 11월 인튜잇사에 의한 인수 당시 민트 사용자는 약 100만 명이었으나, 2019년 기준 현재 민트는 약 1억 3,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 후에도 민트는 여전히 북미 대륙에서 인기있는 개인 금융서비스 회사이자 가장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화된 금융서비스

“

핑안 : 인공지능 ·  
블록체인 · 클라우드 등  
최첨단 기술 기업으로 성장

”

###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 창출의 독보적 선두주자, 「핑안보험그룹」

중국의 핑안보험그룹(이하 핑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주도 금융서비스 회사이다.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보험사 중의 하나인 핑안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600억 달러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하였다. 홍콩(SAR) 및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자기 자본수익률(Return on Equity, ROE) 기준으로 업계 최고이다. 핑안의 시가총액은 2018년 기준 2,000억 달러로 이는 보험사 중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이며, 3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핑안은 2019년 기준 전체 사용자가 약 3억 명에 이르는 온라인 의료 서비스 플랫폼 굿닥터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가 약 45조 원에 달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자산관리 플랫폼인 루팍스 또한 보유하고 있다.

핑안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핑안은 눈부신 디지털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핑안은 이미 보험 사업을 넘어 최첨단 기술 회사로 성장하였으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클라우드(Cloud)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핑안은 발전된 기술을 금융서비스, 의료, 자동차, 부동산,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 핑안이 보유한 플랫폼 및 사업 생태계에 접목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을 주도함과 동시에 중국인의 생활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 ① 핑안의 성장 중추, 세계 정상급 수준의 기술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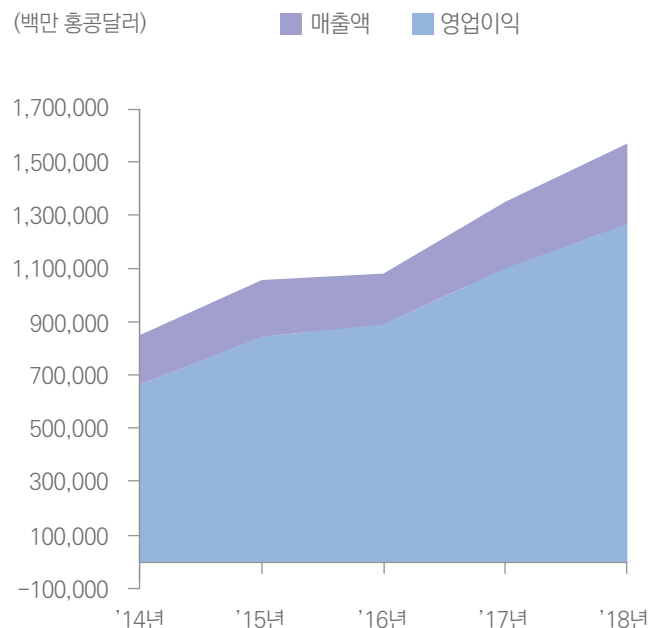
핑안의 기술은 핑안의 성장을 견인하고 금융과 사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의 근간이다. 핑안은 시장의 리더가 되려면 기술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경영진들의 인식하에 기술 연구개발(R&D)에 지난 10년간 약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였다. 이는 10년간 전체 매출액의 1%,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향후에는 금융서비스 산업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10년 내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 핑안보험그룹 사업 영역

보험 · 은행	자산운용 · 투자	온라인 서비스	헬스케어
핑안생보	핑안신탁	루팍스	핑안굿닥터
핑안손보	핑안증권	푸후이 파이낸셜	핑안헬스
핑안연금	핑안자산운용	E-wallet	완자헬스케어
핑안은행	핑안해외홀딩스	OneAccount	핑안헬스케어
핑안홍콩	핑안UOB펀드	핑안 테크놀로지	
	핑안금융리스	핑안 금융서비스	

Source : <http://www.pingan.cn>,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 핑안보험그룹 실적추이



Source : Factiva



핑안에는 현재 5개의 기술 연구기관 및 2개의 해외 R&D센터에서 약 3만 2,000명 이상의 기술 관련 전문가와 2,200명 이상의 정상급 과학자들이 AI, 블록체인, 핀테크, 헬스케어 등 여러 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500명 이상의 빅데이터 과학자(Big Data Scientist)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면인식 기술, 의료목적의 스마트 영상 처리 기술, 블록체인 같은 분야에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 2018년 한 해에만 1,205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 》》 핑안보험그룹 기술 현황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안면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전문가 1,000명 이상 보유 5개 AI 연구기관 운영, 세계적인 협력연구기관 10곳 이상</li> <li>· 5개 에코시스템 및 400개 이상의 AI 적용 시나리오 보유</li> <li>· 얼굴 · 미세표현 · 광학 문자 인식에서 7개 국제 공모전에서 1위</li> <li>· 30년 업력의 전문 지식 및 대규모 실생활 데이터 축적</li> <li>· 8억 8,000만 명의 개인사용자 및 8,400만 개 이상 기업 데이터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li> <li>· HK eTradeConnect 및 OneConnect의 금융 플랫폼 등 여러 분야에서 실제 적용</li> <li>· 차세대 인증기술인 Zero-Knowledge Proof 솔루션</li> <li>· 0.05초 미만 처리 시간</li> <li>· 초당 처리건수(Transaction Per Second, TPS) 최대 5만 개 가능</li> <li>· 블록체인 전문 지식을 갖춘 기술, 재무 및 IT 전문가 그룹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수준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9개의 인증 보유</li> <li>· 100개 이상의 금융회사, 2,500개 의료기관, 10,000개 자동차 대리점 및 7곳의 스마트 시티에 적용 경험</li> <li>· 클라우드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량 400개 이상, End-to-End 커버리지 비율 98% 이상</li> <li>· 마이크로소프트, Amazon Web Services, Oracle 및 IBM 출신의 IT · 인터넷 분야 전문가 그룹 보유(경력 10년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4가지 순간적인 표정 변화를 감지하는 얼굴 인식 기술 보유</li> <li>· 15분의 1초 혹은 25분의 1초 등 짧은 시간 내 눈동자의 움직임 등 안면 움직임 포착</li> <li>· 세계 최초로 원격 대출 심사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li> <li>-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을 60% 감소</li> </ul>

Source : <http://www.pingan.cn>,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 핑안 : 우수한 기술력은 금융 산업 및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근간 ”

핑안의 AI 및 이미지 인식 관련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폐결절 검사 관련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인 Lung Nodule Analysis(LUNA)에서 핑안보험의 자회사인 핑안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AI 스마트 판독 기술이 2018년 ‘폐결절 검출(Nodule Detection)’과 ‘거짓 양성반응 제거(False Positive Reduction)’ 부문에서 각각 95.1%와 96.8%의 정확도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핑안은 AI 기술을 보험사업의 고객센터 부문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 사고 발생 시 고객이 사고 차량의 사진을 찍어 보험청구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면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Superfast Onsite Investigation)이 업로드된 사진을 분석하여 수리비 견적을 고객에게 제시한다. 고객이 견적서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수리비가 즉시 송금처리 된다. 이러한 AI 사고처리 시스템으로 핑안은 2018년 730만 건의 교통사고 청구건을 처리하였다.

### ② 디지털 경제를 위한 포석,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태계 조성

핑안은 사업의 운용을 철저히 플랫폼이 주도하는 생태계 관점에서 생각한다. 핑안은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과 디지털이 가져올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른 어떤 경쟁사보다도 빠르게 디지털 경제를 위해 준비하였다.

“

## 핑안 : 상호 연계된 다수의 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과 생태계 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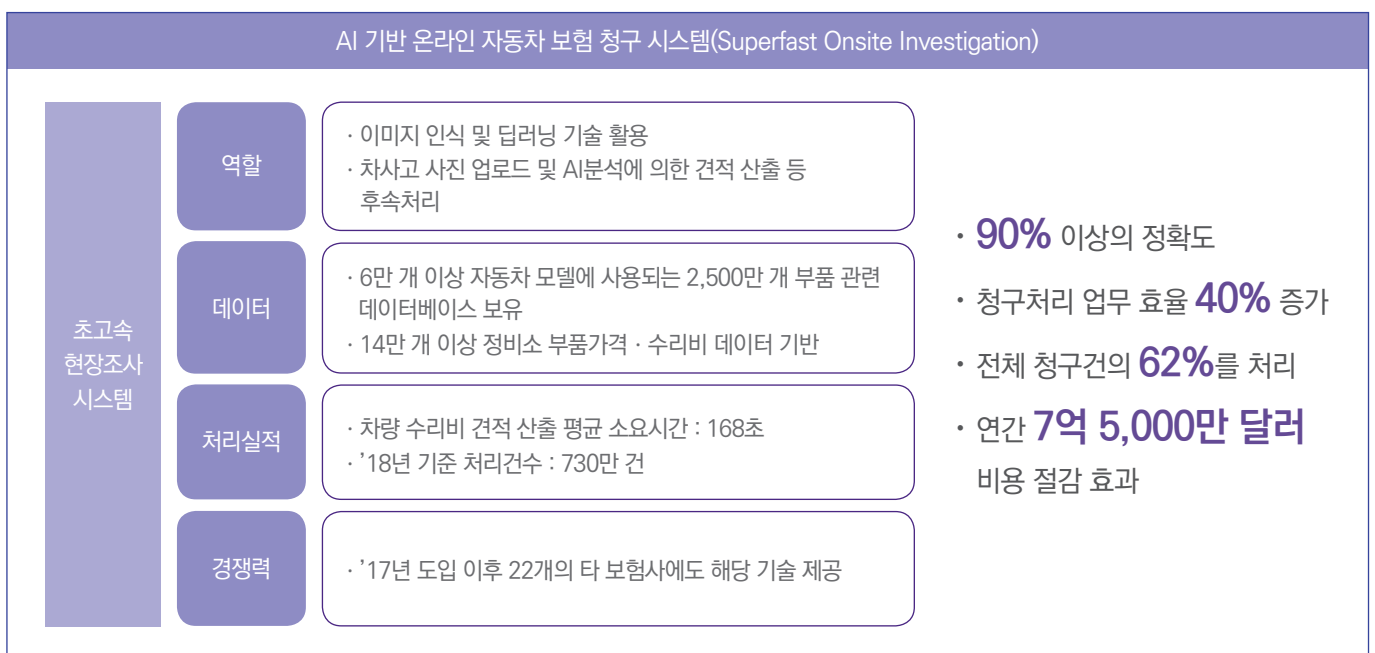
기존의 다른 기업들은 상품을 먼저 팔고 그 후에 사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핑안은 상품을 구매할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용자 니즈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핑안은 자사의 앞선 기술로 금융을 강화하고, 기술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며, 활성화된 생태계를 통해 다시 금융을 촉진한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핑안은 전략대로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핑안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핵심 기술력을 활용하여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자동차, 부동산, 스마트시티 등 그룹의 5대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생태계를 활성화시켰다. 현재 약 6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핑안 굿닥터를 포함하여 루팩스, 오토홈 등 핑안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핑안의 생태계를 접하고 있다. 각 플랫폼은 온라인 의료 상담, 온라인 재산 관리 서비스, 자동차 구입 서비스 등과 같은 디지털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핑안의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플랫폼 사용자들은 핑안의 생태계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핑안의 상품을 구매한다. 핑안은 생태계 관점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을 지능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각 플랫폼은 정보 및 데이터 관점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며 훨씬 더 큰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③ 데이터 분석 기반 고객 니즈 파악, 이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

핑안은 모든 상품을 고객에서 원스톱(One-Stop Service)으로 제공하는 통합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핑안은 고객이 하나의 계정으로 금융 및 디지털 플랫폼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단일 계정(Total One Account)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을 통해 핑안은 보험 및 기타 금융서비스 상품 마케팅 시, 금융 및 보험이 아닌 다른 디지털 생태계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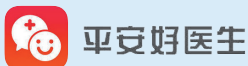
## ▶▶ 핑안보험그룹 기술적용 사례



[참고] 핑안보험그룹의 대표 플랫폼 : 핑안 굿닥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사용자 니즈 기반의 생태계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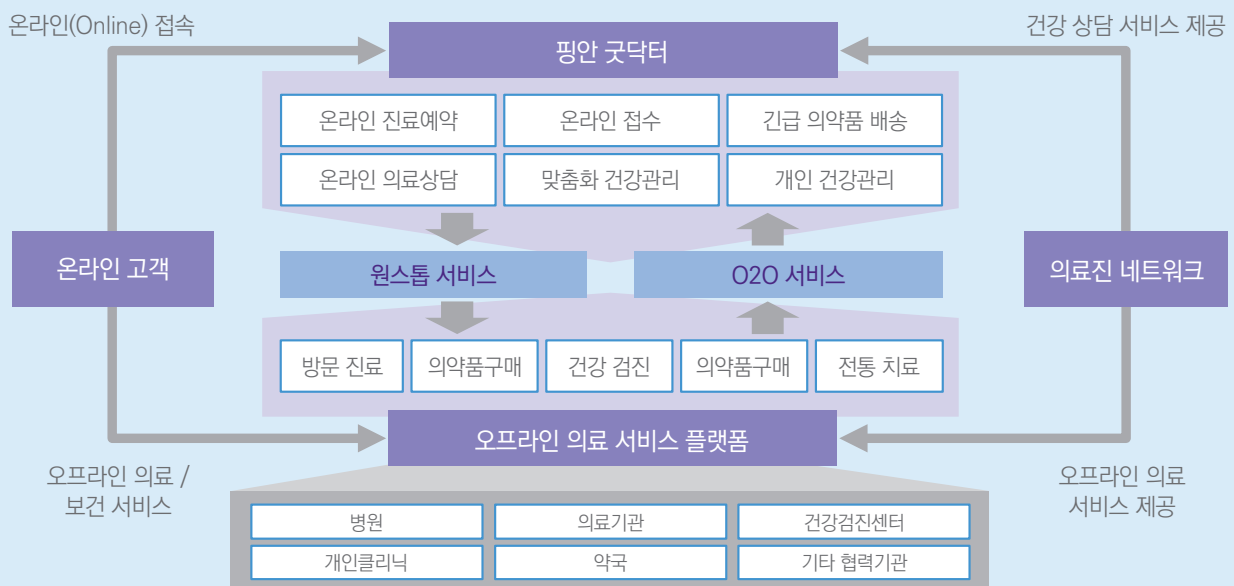
핑안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핑안 굿닥터(Ping An Good Doctor)를 구축하였다. 중국의 의료체계는 1차 의료(Primary Care)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병원에 가서 만나질 가까이 기다리거나 종종 엉뚱한 과에서 진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낙후된 중국의 의료 체계에 지친 중국인들에게 의사와의 의료 상담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굿닥터는 가까운 미래에 보편화될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대표하는 선도적인 플랫폼이다.



Source : Bloomberg

굿닥터는 내부 의료진 1,000명의 지원하에 인공지능이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닥터는 1:1 실시간 의료 상담, 유명 의사와의 진료 예약 지원, 병원의 접수 및 실시간 대기상황 모니터링, 베이징, 상하이 및 선전 등 대도시에서 2시간 내에 의약품을 전달해주는 Online-to-Offline(O2O) 의약품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굿닥터는 AI 무인 진료소(One-Minute Clinics)를 중국 전역에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무인 진료소의 AI는 환자의 의료 이력과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여 진단을 내리며 진료소에 설치된 스마트 의약품 보관함을 통해 약도 구매할 수 있다.

» 온라인 의료서비스 플랫폼 핑안 굿닥터



Source : <http://www.pingan.cn>,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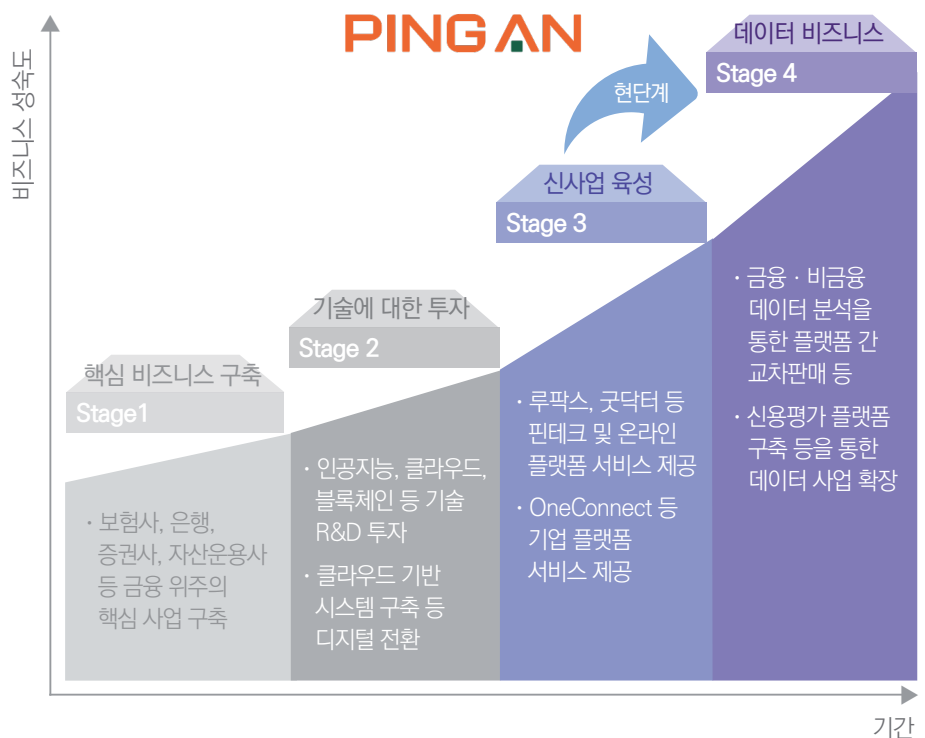
핑안 : 다수의 플랫폼 내  
고객의 금융·비금융  
정보를 통합적으로  
축적 및 활용 ...  
플랫폼 간 교차판매  
역량 탁월 ”

핑안은 금융분야에서는 2019년 6월 기준 1억 9,600만 명 이상, 의료 및 헬스케어, 부동산 등 디지털 플랫폼 기준으로는 5억 7,600만 명 이상의 고객에 대한 방대한 실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핑안은 각 생태계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고객데이터를 또 다른 생태계 내에서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 개인금융위원회, 그룹금융위원회, 그룹기술팀 등의 별도의 조직을 그룹 차원에서 운영한다.

핑안은 여러 생태계에 축적된 방대한 고객데이터 중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서 축적된, 보험과 상관없는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통합·분석하여 마치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듯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고객의 니즈에 따라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고 추천함으로써 핑안의 금융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핑안의 자동차 구매 플랫폼인 오토홈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자동차 보험을 제안하는 식이다. 서로 다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에서 얻은 고객의 정보는 핑안의 보험 및 금융서비스 플랫폼에 엄청난 정보 우위 등과 같은 판매 경쟁력을 제공하는 물론, 사업 부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 생태계에서 파악된 고객의 니즈가 그룹 내 또 다른 생태계에서 흡수되므로 그룹 전체적으로 수익 창출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 생태계 간 발생하는 시너지도 엄청나다. 실제로 핑안의 2018년 신규보험 가입자 4,000만 명 중 36%가 핑안의 생태계 내에서 유입된 고객이었다. 핑안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창출에 대한 효율성과 플랫폼 간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데 매우 최적화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핑안의 이러한 데이터 역량은 그룹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핵심 원동력이다.

#### » 핑안보험그룹 발전 단계



Source : 삼성KPMG 경제연구원

##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즈니스에 구현한 개인데이터 저장소



디지미 : 나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수집 · 활용 ·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 기능 제공



### 정보 보호에 기반한 개인데이터 공유 플랫폼, 「디지미」

디지미(Digi.me)는 2009년 영국에서 설립된 개인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tore, PDS) 사업자이다. 개인의 정보를 단일 플랫폼에서 수집 · 관리 ·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2017년에는 미국계 PDS 사업자인 퍼스널(Personal)을 인수하며 유럽 외 타 지역으로의 확장도 모색 중이다. 디지미와 같은 PDS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회사나 금융회사 등 다른 기업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액시엄(Acxium), 에퀴팩스(Equifax), 엡실론(Epsilon) 같은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와 비슷하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방대하게 수집하는 데이터 브로커와는 달리, PDS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정보주체인 개인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① 사용자 중심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관리

디지미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 기능을 제공한다. 디지미는 개인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 또한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디지미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크게 금융, 소셜, 의료,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정보로 구분된다. 금융정보의 경우, 디지미는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핀테크 기술 기업인 플레이드(Plaid)와 제휴하여 바클레이즈(Barclays), 시티(Citi) 등 1,000여개 은행의 거래내역과 더불어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의 카드사 거래내역까지 모두 취합할 수 있다.

비금융정보의 경우, 소셜 정보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활동 내역을 취합할 수 있다. 건강 정보의 경우, 건강 웨어러블(Wearable) 장치 기업인 핏빗(Fitbit) 등을 통해 사용자의 활동 내역, 수면 기록 등을 입수한다.

### » 디지미의 수집대상 개인정보 및 데이터 출처

구분	금융	소셜	의료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기타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여 개 이상의 은행 및 금융회사의 계좌 및 금융 거래 정보</li> <li>·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등 주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li> <li>· 플레이드(Plaid)와 제휴를 통해 데이터 취합 관련 확장성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이스북, 플리커(Flickr), 인스타그램, 트위터, 핀터레스트(Pinterest)</li> <li>· 포스트, 코멘트 등의 활동 내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슬란드 헬스(Iceland Health), 영국 NHS GP Records, 미국 Blue Button(예정) 등 1,000여 개 기관과 연계</li> <li>· 알러지, 건강상태, 면역 기록, 처방 및 약물 기록 등의 데이터 표준화 시스템 구축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글핏, 핏빗, 가민(Garmin)</li> <li>· 활동 수준, 수면 활동, 건강데이터 등 실시간 데이터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티파이(Spotify), 유튜브</li> <li>· 음악 기록 및 플레이 리스트</li> <li>· 비디오 검색 및 업로드 정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등록 차량의 경우, 영국 면허청(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연계 데이터 취합</li> <li>- 자동차 이력 성능 검사(Motor Ordinance Test, MOT) 상 통과여부 권고사항, 문제 사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롭박스(Dropbox),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원드라이브(OneDrive) 등</li> </ul>





디지미 :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미 사용방법은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임 ”

이에 더 나아가 디지미는 국가 단위 의료정보와의 연계도 시도하고 있다. 2017년 디지미는 아이슬란드 보건국의 의료정보 API에 대한 접근을 허가 받았으며, 미국의 250여 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자와도 데이터 연계를 제휴하였다. 2019년에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허가 받아, 현재 디지미는 미국, 영국, 아이슬란드 3국의 의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미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이다. 사용자가 디지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디지미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데이터에 대한 저장 위치를 선정할 수 있으며, 드롭박스(Dropbox)나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등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사용자가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를 디지미를 통해 연계·취합하고, 플랫폼 내 디지미와 제휴한 다양한 앱을 선택하여 자신이 공유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제휴 앱으로 금융분야는 핀사이츠(Finsights)를 통해 지출내역 분석 등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헬시미(HealthyMe)를 통해 면역, 진단, 처방 및 의약품 정보 등 개인의 주요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레티나리스크(Retina Risk)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분석·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누구에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지 여부를 모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디지미는 사용자의 권한·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플랫폼 내 모든 개인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개인의 데이터를 디지미 플랫폼 내 스토리지 공간이 아닌, 사용자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 ② 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시도

디지미는 데이터 생산자(개인사용자)와 이를 활용하는 기업 간 데이터 중개자로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다. 정보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 디지미는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및 공유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PDS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개발자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미를 통해 목적 적합한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 » 디지미 사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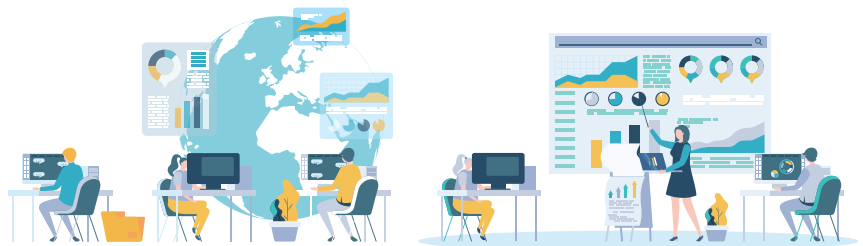


액시엄과 같은 데이터 브로커들을 통해 거래되는 개인데이터의 경우, 마케팅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작위로 수집되고 가공작업을 거쳐 통합된 형태로 판매된다.

“  
**디지미 : 개인과 다양한  
 기업 간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현**”

이와는 달리, 디지미의 데이터는 사용자 동의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제공받기 때문에 데이터 브로커들의 데이터보다 품질 및 신뢰성이 우수하다. 또한 사용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최신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높다. 아울러 디지미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용자의 소셜, 의료 정보 등의 비금융 정보와 은행, 카드거래와 같은 금융정보가 결합(Cross Section of Data)되어 활용 가치가 높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고 디지미와의 제휴를 통해 디지미 플랫폼 내에서 앱을 상용화할 수 있다. 일례로 개인 건강정보와 결합된 보험, 실시간 보험, 개인 생애주기·이벤트가 결합된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디지미 플랫폼 내에서 현재 개발 중이다.

디지미는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 트랜잭션(Transaction) 또는 디지미와 연계하여 창출되는 앱 수익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올린다. 2019년 12월 기준 수수료는 앱에 공유되는 개인데이터 트랜잭션당 0.1달러(사용자 1인당 연간 최대 3달러) 또는 디지미를 통해 창출되는 앱 수익의 7.5%이다. 디지미는 데이터 생산자와 사용자가 만나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많은 소비자가 유입될수록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이며 혁신적인 앱이 개발되고 출시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유입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디지미 연계 주요 애플리케이션

·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여 Facebook, Instagram, Twitter, Pinterest, Flickr 등의 데이터 분석

· 날짜, 시간, 키워드 등 필터를 활용한 분석 기능 제공

**소셜미디어(SNS) 분석앱 Sand**

· 지출내역 분석을 통한 개인 재무관리 기능 제공

· 다양한 금융거래 및 개인 재무 상태를 가시적으로 제공

**개인 재무관리앱 Finsights**

·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위한 최초의 모바일앱

·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자의 질병 진행 상황 분석 및 모니터링

**질병 모니터링앱 Retina Risk**

· 개인 건강상태 확인 및 분석 기능 제공

· 면역, 진단, 처방 및 의약품 정보 등 개인의 주요 건강정보 제공 및 다운로드

**개인 헬스케어앱 HealthyMe**



디지미 :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데이터 권한 강화  
움직임 속 개인데이터  
거래 사업 모델의  
다양성 제시 ”

### ③ 데이터 권한 강화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전 세계적으로 개인데이터의 권한과 활용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사업 모델은 데이터 브로커를 넘어서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Data Marketplace), PDS, 정보은행(Information Bank)으로 진화 중이다. 특히 2019년 4월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정보은행 디프라이임(DPRIME)을 설립하여 정보은행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진 상황이다. 정보은행은 PDS 기능과 더불어 데이터 판매에 대한 보상과 개인데이터의 관리 대행이라는 데이터 신탁 개념까지 포괄한다. 정보은행은 데이터 관리, 활용, 판매 등 개인의 데이터 관리를 대리해준다는 측면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가 필요하며,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나 유·무형의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실험적 모델이다.

EU가 GDPR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 권한을 명시하고 강화하였듯이,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사업 모델의 진화 과정에서 디지미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한 강화 기초를 반영하여 디지미가 개인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수정 또는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사용자 스스로가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기존 PDS 대비 개인데이터에 대한 관리 기능은 배제하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낮춘 것이다. 일부 앱을 통해 데이터 제공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한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미는 API 및 암호화 기술을 통해 표준화를 구현하여 다수의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점은 디지미와 같은 사업모델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미는 정보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개발자·기업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편의성이 높은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마이데이터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 디지미 데이터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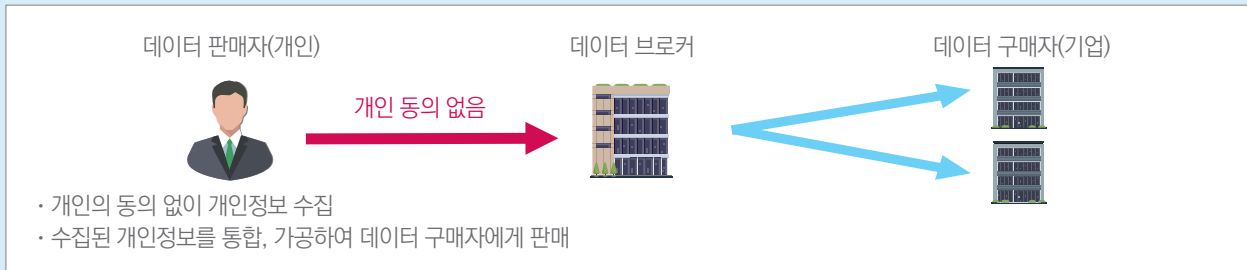
	앱개발자·기업의 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	디지미(Digi.me) 데이터 경쟁력
데이터 확보	· 개인의 데이터는 다수의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생성되어 통합적 수집이 어려움	· 디지미는 다양한 플랫폼(재무, 소셜, 건강, 엔터테인먼트 등 데이터) 내 사용자 데이터 집계 가능
데이터 효용성	·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나 개발에 용이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 1,000개 이상의 데이터 Source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확보 가능 · 디지미의 SDK*는 개발이 용이한 JSON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
컴플라이언스	· 개인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문제 발생 가능 · 개인 소송 제기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존재	· 디지미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제거
경제성	·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하우스(In-house) 플랫폼 구축 방식은 시간 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	· 개인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tore)를 통한 데이터 획득 시 시간과 비용 절감

Source : <https://digi.m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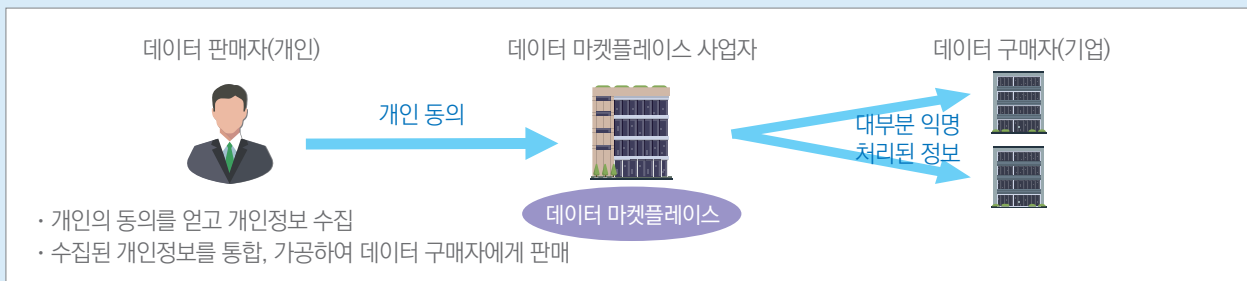
Note :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모음(Software Development Kit)

### [참고] 데이터 거래 사업모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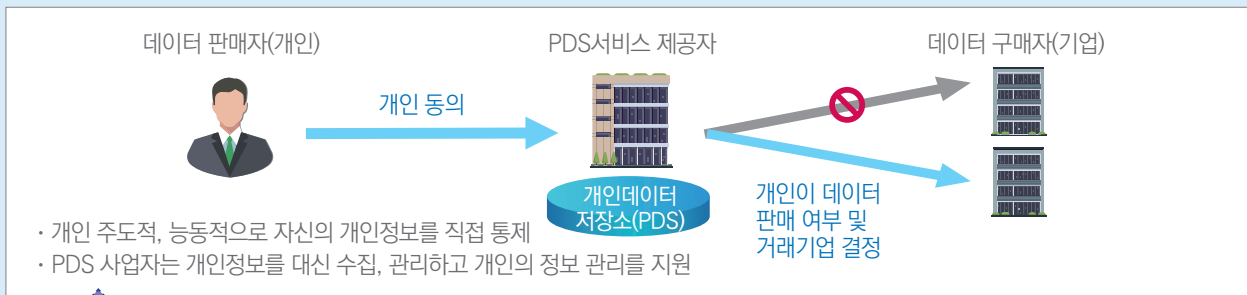
#### 1.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 2. 데이터 마켓플레이스(Data Market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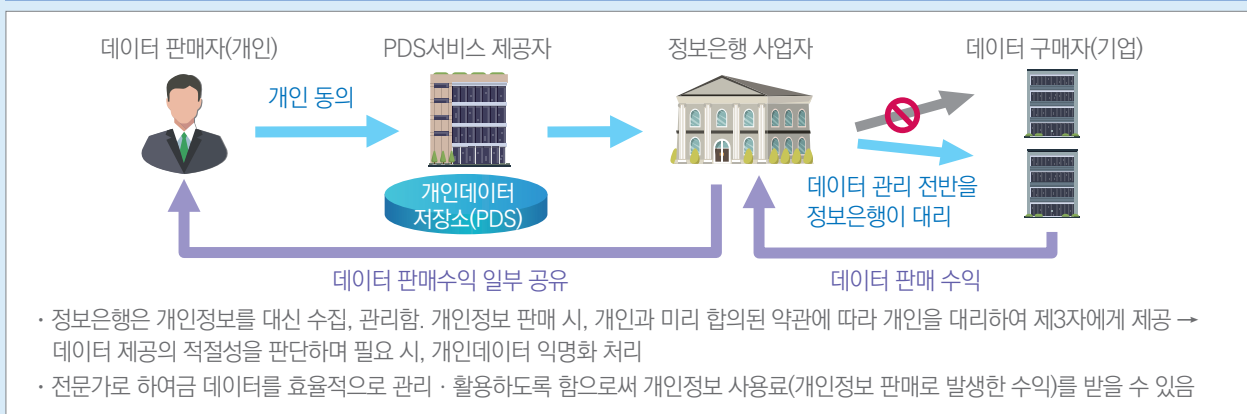


#### 3. 개인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tore)



### 디지털(Digi.me) Value Proposition

#### 4. 정보은행(Information Bank)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 산업적 시사점

“  
데이터 확보 · 축적 ·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역량 더욱 중요해질 것  
”

###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고도화

국내 전 금융권에 마이데이터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은행을 넘어서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개인데이터가 오픈 API로 개방될 예정이다. 은행 입출금 내역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 내역, 증권사 투자예탁금, 주식 · 펀드 보유내역, 보험계약 등 개인의 수많은 금융정보가 모두 공유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금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의료 · 에너지 ·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마이데이터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 개인의 세금납부 내역과 같은 행정정보, 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의료정보 등 개방될 데이터 범위와 종류도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소비자의 전통적 구매 척도였던 시장 내 브랜드 파워, 자본 규모 등의 중요성은 희석되고 있다. 반면에 데이터 축적량, 데이터 분석력과 같이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역량은 기업의 매우 핵심적인 경쟁요소가 되었다. 향후 개방되는 데이터가 금융 · 비금융을 망라하여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밀한 데이터 역량이 요구된다. 평안보험그룹은 원래 보험사로 출발 하였으나,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여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의 확보, 인프라 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 투자 등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세계 정상급의 데이터 역량을 보유한 기술 주도 종합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기업은 데이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수한 인재 영입 · 육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데이터와의 시너지가 큰 만큼, 관련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평안보험그룹과 같이 데이터 역량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관련 경쟁우위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술 강점을 강화하여 다른 경쟁 서비스 대비 차별화에 힘써야 한다. 보다 심도 있는 데이터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고객 경험의 극대화 및 차별화

디지털 혁신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금융이 더 편리하고, 유연해야 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 산업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객 경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기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민트의 알고리즘 기반 거래데이터 자동 분류 기능이 선보인 후, 인투잇의 쿼큰은 경쟁에서 밀려났다. 민트의 예는 시장의 선도주자도 언제든지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의해 대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 요소이며, 이를 위해 기업은 핵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 ·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고객 경험을 고도화해야 한다. 민트를 비롯한 해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개인신용통합 조회 등 단순히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분석 및 이에 기반한 상품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며 서비스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 기업도 이와 같이 기존의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시도하거나 타 사업자와 제휴하여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추가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결국은 고객에게  
편리하고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해야...  
고객 신뢰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용자  
확충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 가능

”

장기적으로 기업은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도입의 확대로 비금융 영역의 데이터도 금융 데이터와 같이 개방될 예정이다.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의 조합은 핀안보험그룹의 예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단일 영역의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고객 인사이트 및 효용성을 제공하며, 이는 고객에게 보다 편의성이 극대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선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은 제품 및 서비스 선택을 위한 사용자의 객관적 잣대이자 고객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경험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데이터 관리 플랫폼 비즈니스, 사용자 확보 및 신뢰가 중요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이 생성한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므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개인데이터 저장소와 같이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마이데이터를 추진 중인 유럽과 미국 등은 디지미, 마이덱스(Mydex) 등과 같이 개인이 주도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개인데이터 저장소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다면, 정보은행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과거 일련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보안지식 미흡 등 데이터 관리에 대한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개인을 대리하여 사용자와 미리 협의된 약정에 따라 데이터 관리, 판매 등을 대신해주고 수익 일부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은행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충분한 사용자 확보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서비스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사용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실용적인 서비스나 대중적인 보상 콘텐츠를 마련함으로써 플랫폼 및 데이터 활용의 이점을 사용자가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관리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파악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요하다. 특히 본인 인증, 데이터 암호화, 백업, 데이터 유통플랫폼 간 연계 방안, 데이터 검색을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 정보의 교환·검색에 필요한 API 구축방안 등 관련 기술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검토 및 도입은 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보안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실제 사고사례 분석에 근거한 영향도 조사, 추적 조사 등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 HOW KPMG CAN HE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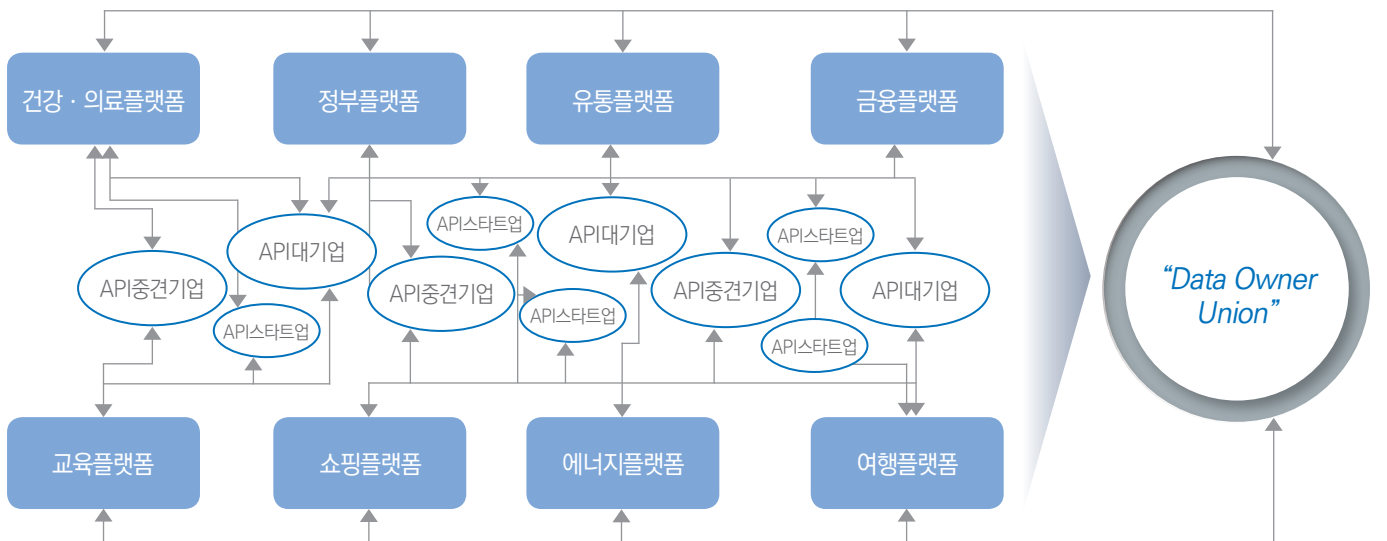
삼성KPMG는 Mydata 패러다임으로 촉발될 Open API 기반 Data-driven Economy에 적합한 각 기업, 기관, 조직, 섹터의 비즈니스 발굴 및 오퍼레이션 전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API Economy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 금융·물류 인프라의 전 섹터 연계와 융합 등 Data & Analytics(D&A)를 넘어서는 프로세스 정립, 생존 및 신사업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MyData 시대, 삼성KPMG는 고객이 디지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MyData 발전단계별 KPMG Offering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b>환경 분석 및 개별 기관·조직 마스터플랜 수립</b>  <b>환경 분석 및 방향성 수립</b> · MyData 비즈니스 분석 · 사업자 Resource 역량 진단 · 사업모델 방향성 수립  <b>MyData 대응 비즈니스 모델 정의</b> · Open Banking 서비스 모델링 · MyData 파일럿 서비스 수행·검토  <b>Business 마스터 플랜 수립</b> · 비즈니스 서비스 단계적 로드맵 · 플랫폼 구축 로드맵 · 투자 로드맵 및 ROI 검토	<b>Portal Platform (포털 플랫폼)</b>  · 신사업·운영전략·데이터 M&A(보관자·소유자 간) · 플랫폼 아키텍처, 디지털 거버넌스 및 생태계 조성 · 법령 따른 프로세스 개선, 규제개선 샌드박스 자문 · 플랫폼 사업자의 Cyber Security 데이터 기반 경제학·사회학	<b>API Distributor (API 데이터 활용자)</b>  · 데이터 보관자·소유자 및 스타트업 플랫폼·프로세스 전략 · PE, VC, 공공부문, 대기업 등 신사업·스타트업 Portfolio · 데이터 거래구조 생성, 진화단계별 Cyber Security · 행동과학, 실험경제학 기반 사회·경제구조 재설계 제안	<b>Data Owner Union (데이터 오너 연합)</b>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자문 (인프라 조성·운영, 투자환경 등) · 사회적 가치 Pro Bono 가이드 (Data Owner Union 위한 플랫폼 조성 및 기부채납 등) ·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디지털 습지) 조성 · Data Opt-in & out 선택에 따른 Data Lifecycle 관리 · MyData 이해관계자 권리 및 의무 정립, 인센티브 구조화 자문



## MyData 혁신 흐름도\*



\* 단기적으로는 API 유통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복잡성 관리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Data Owner Union 등장으로 데이터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

# Business Contacts

## Digital Consulting Services

조재박 전무 T. (02)2112-7514 E. jaeparkjo@kr.kpmg.com	양현석 전무 T. (02)2112-3009 E. hyunseokyang@kr.kpmg.com	이희정 상무 T. (02)2112-7814 E. hrhee1@kr.kpmg.com	윤대철 상무 T. (02)2112-0150 E. daechulyoon@kr.kpmg.com
이동근 상무 T. (02)2112-7587 E. tongkeunlee@kr.kpmg.com	최성집 상무 T. (02)2112-3200 E. seongjipchoi@kr.kpmg.com	김세호 상무 T. (02)2112-7879 E. seihokim@kr.kpmg.com	

##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장지수 부대표 T. (02)2112-7577 E. jjang@kr.kpmg.com	박상원 전무 T. (02)2112-7012 E. sangweonpark@kr.kpmg.com	이인석 전무 T. (02)2112-7583 E. insuklee@kr.kpmg.com	정윤호 상무 T. (02)2112-7982 E. yunhojung@kr.kpmg.com
조기욱 상무 T. (02)2112-0992 E. kiwookcho@kr.kpmg.com	이준래 상무 T. (02)2112-3081 E. junraelee@kr.kpmg.com	황학순 상무 T. (02)2112-7736 E. haksoonhwang@kr.kpmg.com	

## Risk Consulting Services

박용수 부대표 T. (02)2112-0421 E. yongsoopark@kr.kpmg.com	김원택 전무 T. (02)2112-0384 E. wontaegkim@kr.kpmg.com	박성철 상무 T. (02)2112-0176 E. sungchulpark@kr.kpmg.com
--	--	--

## 디지털혁신센터(Center of Excellence)

박문구 전무 T. (02)2112-0573 E. mungupark@kr.kpmg.com
---

[kpmg.com/kr](https://kpmg.com/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